

CONTENTS

권두칼럼

공평과세와 공시지가제도의 선진화 · 채미옥 02

현안분석

안전관리 관련 부담금의 역할에 대한 소고 · 정재호 08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및 참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월드컵을 중심으로 · 최승문 23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독일-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중 일부 요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외 36

정책흐름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84

'14년 가계소득 3.4% 증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 90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 95

중소 수출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97

관세청,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외교 강화 98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 시행 100

이슈&포커스

“고령층 재산세 부담 과중...과세이연제도 도입해야” 외 104



공평과세와 공시지가제도의 선진화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 각 부문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는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서 기계화 및 정보화에 따라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보화와 기술 진보는 일자리의 지형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에 따라 국가정책의 진퇴도 좌우한다.

모든 제도와 정책은 한번 도입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집단만이 아니라, 주변 제도, 당시의 행정 수행능력 및 행정여건 등과도 타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 수립 초기의 정책목표와 수행체계와는 다소 상이한 형태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게 점진적으로 보완·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비로소 성숙된 정책으로 안정된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국가정책

이와 같은 정책의 기본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변천사를 살펴보면 하나의 제도가 꾸준히 진화·발전된 예보다 제도 도입 후 사문화되거나 폐지되고, 반복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사례가 더 많다. 조세제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느 시대나 공평과세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가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고려시대에는 농산물 수확현장에 나가서 풍년과 흉년을 조사하여 수확의 증감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을 시행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수확량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사람과 수확량을 조사하는 향리 간의 유착 및 비리문제가 해묵은 과제였다.

세종대왕은 이 같은 답험손실법의 폐해를 막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1444년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골자로 하는 공법(貢法)을 발표하였다.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은 지방의 재량권을 배제하고 국가가 조세 징수의 기준을 구축한 조세제도로서, 오늘날의 공시지가제도와 유사한 공적평가제도

를 근간으로 한 제도였다. 전분6등법은 공간적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연분9등법은 측우기라는 과학적인 장비를 활용하여 연도별 풍년과 흉년을 평가하여 시계열적 과세 합리성을 높인 평가방법이었다. 장영실이 1442년에 개발한 측우기를 서울과 각도의 군현에 설치하여 지역별 강우량을 계측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그해의 작황을 상상년, 상중년, 하하년 등의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연도별로 평가된 등급에 따라 상상년은 1결에 20두(斗)에서 하하년은 1결에 4두를 부과하는 등 등급별로 정해진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은 관리가 직접 수확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지 않고, 국가가 과학적 기준을 기초로 전답의 연도별 등급을 고을단위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공평과세를 위해 수많은 학자와 민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선진적인 제도도,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약화되어 16세기에는 풍년과 흉작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율의 세액이 적용되는 등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렇듯 아무리 공을 들인 정책도 지속적인 정책의지와 보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공평과세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

1989년도에 도입된 공시지가제도 또한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1980년대 말에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 택지소유상한제와 같은 토지공개념제도와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시지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원화된 지가조사방법과 기준을 통해 공시하는 토지가격으로서, 매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50만 표준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 공무원이 개별 필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해 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25년이 경과하면서 현행 공시지가제도는 시가와외의 괴리, 지역 간 필지 간 지가불균형 등의 문제로 부동산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제도 도입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사회적·행정적 여건으로 인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시지가제도 도입 당시에는 정부가 시장가격자료를 파악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는 전문적인 평가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로 구축되었으나, 이제는 25년 이상 축적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선례자료가 있고,

.....
**공시지가는 매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50만 표준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
 공무원이 개별 필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해 왔다.**

.....

**2014년부터는
스마트폰에
현장조사 앱을
장착하여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투입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면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


2006년부터 도입된 실거래가격신고제도로 인해 연평균 220만여건의 실거래 가격자료가 신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는 행정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도 공시지가 조사체계 개편의 불가피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돌며 조사하던 업무들의 상당부분을 수치지적도, 수치지형도, 도시계획도 등이 연계된 각종 행정정보망과 GIS 등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고, 험준한 산악지대 등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인공위성사진이나 무인기를 띄워 쉽게 토지이용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용도변경, 건축허가, 개발계획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가변동 요인과 공간정보가 국토부의 '일사편리'와 'V월드' 등 행정정보로 축적되어 있고, 2014년부터는 스마트폰에 현장조사 앱을 장착하여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투입되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면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공시지가 조사체계의 개편작업은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부동산시장 관리정책의 선진화와 공평과세라는 큰 틀에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조명되어야 한다. 아날로그적 조사로 산정하던 공시지가 조사산정체계를 각종 행정전산망 자료와 첨단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조사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한편, 실거래가격자료를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상시적으로 분석하여 공시지가의 시가근접도를 높이고 지역 간 필지 간 지가균형을 높일 때 공평과세의 실천성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기존 제도를 리모델링하는 지혜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은 기우제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농사와 강수량과의 밀접한 관계성을 간파하고, 측우기라는 과학적 측정도구를 동원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높였던 혁신적 체계 개편이었다. 이러한 혁신적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발전되었다면 토지제도 문란으로 점철되었던 조선후기의 역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대학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 전반에 정보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시지가제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제도들 중에서 정보화와 같은 시대적 여건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가 의외로 많다. 이들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제도를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유사한 제도의 중복적 양산을 막고,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적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도가 많아지고, 대를 이어가며 제도를 다듬고 물려받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
우리나라에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도가 많아지고,
대를 이어가며 제도를
다듬고 물려받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안전관리 관련 부담금의 역할에 대한 소고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및 참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월드컵을 중심으로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안전관리 관련 부담금의 역할에 대한 소고

I. 도입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cheung@kipf.re.kr)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근래 발생하는 여러 사고들 중에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의 신중플루 확산, 2011년의 대구모 정전 사태, 2012년의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도 예전과 달리 그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 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자연재난들도 다양한 요인이 서로 얽혀 있어 순전히 자연재난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인적재난으로 인해 그 피해가 커진 것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듯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회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 등을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재원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곧 전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안전 관련 재정수요 이외에도 복지 관련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수요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회적 재난이 수익자 또는 원인자가 분명한 분야라면 보험과 같은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수익자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 그러나 수익자 또는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아 민간 보험제도가 존재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고, 혹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가 명확하지만 보험과 같은 민간재원만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당 수익자 또는 원인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부담금제도의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러한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분석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부담금을 연계시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다양한 재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담금제도와 연계 가능한 재난을 구분한 이후, 이러한 재난과 보험과의 관계, 부담금제도의 특징을 감안하여 부담금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부담금의 정의 및 특징

1. 부담금의 정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 의무

위와 같이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

“
그동안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분석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부담금을
연계시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과권자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또는 법인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이 부여된 자”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특정 명칭과는 상관없으며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도 관계없다고 규정하는 등 부담금에 대해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세와 구분되는 기준은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의무’뿐이고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은 목적세와 구분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정의를 통해 부담금과 조세를 구분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2. 협의의 부담금의 개념: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부담금을 하나의 정의 규정으로 포괄하려는 의도로 인해 포괄적으로 부담금을 정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담금을 협의의 개념으로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행정법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부담금의 정의는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이다.

“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

즉,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수익의 한도 안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정의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수익자 혹은 원인으로 분류 가능하며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구분은 반대급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반대급부는 개별적인 반대급부를 의미하며, 모든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수익자부담금의 부담의무자는 그 사업에 의해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해당자 범위를 지적하거나 혹은 ‘이익을 받는 자’,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자’ 등의 규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액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한정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부담의무자 이외에 그 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비용 전부를 부담금으로서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은 원인자 부담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 자’ 대신 ‘현저하게 원인을 제공한 자’로 변경해서 적용하면 된다.

III. 재난의 분류와 범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안전이란 자연적 혹은 인위적 위협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

서 자연적 혹은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재난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안전은 사전에 재난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재해는 재난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인명상해나 재산손해 및 환경훼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해는 재난의 결과로 사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장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재난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재난의 개념과 분류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재난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재난에 대한 개념 정리와 다양한 종류의 재난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재난을 분류하여 부담금제도와 연계 가능한 재난의 범위를 한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장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1〉 재난의 분류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회적재난	인적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염병 확산 등의 피해	중앙정부 소관 도로교통사고, 화재, 산불, 철도(열차, 지하철), 폭발, 해양사고, 가스사고, 유·도선사고, 환경오염사고, 공단 내 시설사고, 광산사고, 전기(감전)사고, 승강기사고, 보일러사고, 항공기사고
		지자체 소관 붕괴사고, 수난사고(물놀이, 익사 등), 등반사고, 추락사고, 농기계사고, 자전거사고, 레저사고(생활체육), 놀이시설사고(어린이 놀이시설, 유원지 놀이시설)

자료: 소방방재청(2013), pp. 7~15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가 표로 작성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연재난은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벼락,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은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재난을 의미한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다시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해난사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재난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우리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재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우선,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회재난 중 사회적재난에 대해서도 국가기본체제보호 관련 중앙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 등으로 중앙정부인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재난 중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2. 부담금제도와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난의 범위

논의에 앞서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재난들 중에서 부담금제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재난은 사회재난 중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인적재난에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자연재난의 예방 또는 자연재해 복구는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담금이 아닌 조세수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과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 복구는 특정 공익사업도 아니고

“
**부담금제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재난은 사회재난 중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인적재난에 한정할 수 있다.**
 ”

이런 특정 공익사업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계된 수익자 또는 원인자도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자 또는 원인자에 국한하고 있는 부담금제도의 특징을 감안할 때 자연재해에 대해 부담금제도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수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연재해의 복구 등을 위해 일 반회계에서 예비비 편성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일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보험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 그리고 2008년부터는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풍수해 피해 보상 등이 이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사회재난은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재난에 해당하는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자연재난처럼 부담금이 아닌 조세수입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상자는 전 국민으로 자연재해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부담금제도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재난은 사회재난 중에서 인적재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재난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인적재난(붕괴사고, 수난사고, 등반사고, 추락사고, 농기계사고, 자전거사고, 놀이시설사고 등)은 원인자 등이 불특정 다수이기에 부

담금제도를 통해 사고 예방 또는 피해 복구가 어려우며 부담금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부담금제도를 통해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적재난 중에서 부담금제도를 통해 운용이 가능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인적재난 피해 규모

인적재난 중에서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재난은 도로교통사고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인적재난 사고 발생건수 303,707건 중에서 도로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3,656건으로 약 7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적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한 7,322명 중에서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는 5,392명으로 이 역시 전체의 약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상자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전체 인적재난 사고의 약 91.7%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인적재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적재난 중에서 재산피해가 가장 큰 재난은 화재인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인적재난 사고 재산피해 규모 3,639억원 중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2,895억원으로 전체의 약 7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 내 시설,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재산피해가 다른 인적재난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사고로 인해서도 차량 파손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집계하는 재난현황 자료에는 그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표 2〉 인적재난 유형별 피해 및 비중(2012년)

(단위: 건수, 명, 억원, %)

	유형	발생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발생 비중	사망자 비중	부상자 비중	재산피해 비중	
중앙정부	전체 합계	303,707	7,322	375,807	3,639	100.0	100.0	100.0	100.0	
	도로교통	223,656	5,392	344,565	-	73.6	73.6	91.69	-	
	화재	43,249	257	1,956	2,895	14.2	3.5	0.52	79.55	
	산불	197	1	1	25	0.06	0.01	0.00	0.69	
	철도	열차	130	52	84	1	0.04	0.71	0.02	0.03
		지하철	110	56	125	3	0.03	0.76	0.03	0.08
	폭발	48	4	82	5	0.01	1.17	0.02	0.14	
	해양	1,632	64	21	-	0.53	1.16	0.01	-	
	가스	125	20	159	7	0.04	2.44	0.04	0.19	
	유·도선	11	-	9	-	0.00	-	0.00	-	
	환경오염	92	11	56	263	0.03	0.15	0.01	7.23	
	공단 내 시설	11	8	77	358	0.00	0.1	0.02	9.84	
	광산	60	9	51	39	0.02	0.12	0.01	1.07	
	전기 (감전)	557	49	508	-	0.18	0.67	0.14	-	
	승강기	133	12	158	-	0.06	0.16	0.04	-	
	보일러	-	-	-	-	-	-	-	-	
항공기	7	6	6	39	0.00	0.08	0.00	1.07		
지자체	붕괴	402	43	198	1	0.13	0.58	0.05	0.03	
	수난	물놀이	25	25	-	-	0.01	0.34	-	-
		익사 등	3,929	607	1564	3	12.9	8.29	0.42	0.08
	등산	6,020	139	4795	-	1.98	1.89	1.28	-	
	추락	10,119	333	9181	-	3.33	4.54	2.44	-	
	농기계	2,076	140	1903	-	0.68	1.81	0.51	-	
	자전거	6,419	60	6300	-	2.11	0.82	1.68	-	
	레저(생활체육)	4,539	31	3877	-	1.49	0.42	1.03	-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160	3	136	-	0.05	0.04	0.04	-
		유원지 놀이시설								

자료: 소방방재청(2013) p. 389에서 제시한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
**부담금제도를 통해서도 보험처럼
 재난 발생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을 바탕으로
 일부 사전적인 예방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여
 적립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부담금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

IV. 부담금제도와 보험제도의 역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적재난 중에는 부담금제도를 통해 이미 안전관리(재난 예방) 또는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 등의 보험제도¹⁾를 통해 사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활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법에 의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담금제도와 보험제도의 특징을 통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담금제도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사전적 의미는 재해나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재난 발생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을 바탕으로 일부 사전적인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재난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발생 이후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그 목적이 있다.

부담금제도를 통해서도 보험처럼 재난 발생에 따

른 사후적인 보상을 바탕으로 일부 사전적인 예방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여 적립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부담금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시장경제에 따라 발달한 보험제도를 통해 적절한 적립규모와 부과요율이 책정되는 것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보상은 보험제도가 더 적절하다. 따라서 사후적인 보상에 부담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민간의 보험제도가 부담금제도보다 더 효율적인 인적재난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사고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항공기보험 등이 그렇다. 또한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주 및 유·도선 사업자²⁾ 역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에 의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항공, 운송)보험, 책임보상보험, 기술보험(기계설비, 장치, 전자기기, 건설공사 등), 근로자상해보험, 재보험 등의 다양한 보험제도가 존재

2) 선체보험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

〈표 3〉 가스 관련 의무 보험 규정들

구분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적근거	〈제4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및 시공자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제1항〉 사업자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벌칙조항	〈제54조 제1항〉 미가입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2조 제1항〉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1항〉 미가입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면 부담금제도는 보험제도와 달리 사전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담금제도의 특징상 원인자가 분명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원인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아닌 조세, 즉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제도로 운영이 어려워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면, 부담금제도를 통해 원인자에게 일정 정도의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부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원인자가 분명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인적재난은 부담금이나 보험제도가 아닌 해당 시설의 수수료 수입을 이용해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을 직접 이용하거나 혹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가 분명하게 한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으로 안전관리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안전의 경우에는 지하철을 직접 이용하는 승객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수수료) 수입을 통해 지하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일부 사회재난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기(감전),

승강기, 보일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이용자가 불특정하거나 다수이지만, 이용자 또는 관리자들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분야이며 산업발전, 기술진보 등을 통해서도 사전적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관리가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요약해 보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부담금제도의 역할은 보험제도와 달리 사전적인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관리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담금제도의 특징상 원인자가 분명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원인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아닌 조세, 즉 국가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후적인 보상은 보험제도가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 밖에 보험제도와 함께 수수료 재원, 안전관리규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부담금제도를 통해서 민간 보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부담금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민간보험제도로 운용이 되지 않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분야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표 4〉 인적재난과 연계된 부담금 및 보험제도

		부담금제도	보험제도
도로교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 자동차보험 - 도로운송사업자보험
화재		한국화재보험출연금	- 화재보험
산불			
철도	열차		- 영업배상보험 - 운송보험
	지하철		- 화재보험 - 테러보험
폭발		안전관리부담금	- 화재보험 - 가스사고배상보험
해양		운항관리자부담금	- 해상보험(선박) - 선주배상보험 - 선체보험
가스		안전관리부담금	- 가스사고보험
유·도선			- 선주배상보험 - 유도선사업자배상보험 - 선체보험
환경오염		해양오염-방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 해양책임(해양오염 등) - 원자력손해배상보험
공단내시설			- 근로자재해보상 - 기계, 전자기기 손해배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광산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전기(감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승강기			- 기계, 전자기기 손해배상보험
보일러			
항공기			- 항공보험(기체보험, 상해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등) - 재보험

V. 기존 부담금의 역할 및 역할 확대

1. 기존 안전 관련 부담금 특성 구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적재난 중에는 이미 부담금제도를 안전관리 또는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사업 비용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방제분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존의 이러한 부담금들은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먼저 안전과 관련된 부담금으로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안전관리부담금, 사용 후 핵연료관리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등이 있고,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와 관련된 부담금으로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방제분담금 등이 있다. 한편,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목적으로 운용되는 부담금으로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등이 해당된다.

〈표 5〉 안전과 관련 부담금 분류

	안전(사전 재난예방)	사후 피해복구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부담금	○	○
안전관리부담금	○	-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	-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
석면피해구제 부담금	-	○
방제분담금	-	○

한편 이러한 기존의 안전 관련 부담금들은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간 보험제도가 있지만 일정 부분 보험제도로서의 한계가 존재하여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및 사후 피해복구를 위해 운용하는 부담금과 민간 보험제도로 운용하기 곤란하여 국가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민간 보험제도가 있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여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및 피해복구를 위해 운용하는 부담금으로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안전관리부담금, 방제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민간 보험제도로 운영되기 곤란하여 국가가 나서서 안전관리 및 피해복구를 위해 운용되는 부담금으로는 원자력 관련 부담금,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등이 있다.

〈표 6〉 관련 부담금의 민간 보험 존재 여부

	민간 보험 존재 여부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부담금	○
안전관리부담금	○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석면피해구제 부담금	-
방제분담금	○

향후 부담금제도를 통해 안전 관련 재원을 조달하고자 한다면, 민간 보험제도로 운용이 곤란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안전관리 및 피해복구가 필요한 분야, 또는 민간 보험제도가 있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보험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부담금을 염두에 둘 때에는 앞서 부담금의 특징 등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전적으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자(원인자)가 분명하고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운용해야 한다.

2.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한 부담금의 역할

1)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보상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의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보상은 의무적 보험가입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책임이행수단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
**환경오염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보험제도가 작동하지만,
 만약 원인이 불분명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제도로 피해구제를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있다. 국회에서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신설을 논의하고 있으며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보험제도를 통해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 제도를 통해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시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법안과 부담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³⁾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원인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이라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부담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해 부담금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부과금 등의 다양한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 부담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과 부담금 중 어느 제도로 책임이행 수단을 강제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등에서는 보험을 선호하고 있고, 이와 함께 책임이행 수단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부담금 부과는 배제하자는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다.⁴⁾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보험제도로 할지 부담금제도로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보험제도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부담금제도보다는 민간 보험제도가 더 우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와 산업계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보험제도를 통해 운용할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보험제도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금을 통해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보험료율, 보상한도 등을 정부에서 일부 규제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장원리에 의해 운용이 되면, 보험사와 사업자 모두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여겨진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막대하고 이러한 막대한 피해 복구 비용을 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한다. 또한 일정 요율로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원인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관련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어 원인자부담 원칙에도 적절하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더 소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보험제도가 작동하지만, 만약 원인이 불분명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제도로 피해구제(예를 들어 토양 복구 등)를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법률안에서는 환경오염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 환경오염 원인자가 파산 등으로 피해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상 등에 대해 환경오염피해 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으로 피해구제를 실행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재보험료,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보상제도를 부담금제도를 통해 운영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14)

4) 환경부(2014) 보도자료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 출연금이 충분하지 않고 재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에 한정해서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담금을 고려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석유세, 화확품세 등의 정부의 조세수입을 통해 슈퍼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⁵⁾ 따라서 재원 조달의 일부분에 한정해 부담금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은 사후 피해보상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및 검사 비용에 본 부담금 재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은 원자료를 사용하는 관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원자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및 검사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2)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안전 관련 분야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험제도를 통해 운영되기 어려워 국가를 통해 부담금제도로 관리되는 분야가 있는데,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사업 비용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향후에도 이런 분야에서 수익자(원인자)가 객관적으로 연계되어 한정되어 있다면 부담금제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부담금 부과요율
 단순히 현재 발생량과 사업이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원전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그 사회적 비용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에 연동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분야가 원자력 관련 분야로 생각되며, 이 중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의 역할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은 원전 폐쇄 이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고 부담금의 요율도 분기별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저장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서도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⁶⁾ 벨기에, 헝가리, 스페인 등에서는 부담금으로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조세로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저장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반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 복구와 같은 안전관리 비용은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요율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순히 현재 발생량과 사업이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원전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그 사회적 비용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에 연동하도록 조정하는

5) 환경부(2014)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별 공동보험(Pool)을 형성하여 환경오염 피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환경오염피해보험상품을 통해 임의보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은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환경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다.

6) 홍성훈 외(2014), pp. 106~116.

“
**유해화학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해
 시행초기에는 정부에서 부담금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정부에서는
 법적인 규정만을 제시하고 일본처럼
 민간에서 자체적인 방제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부담금운용평가단(2011)에서도 원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재평가하여 이를 부과요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원자력관계자 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은 원자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및 검사 비용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유해화학물질이 해상으로 운송되면서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고 등으로 해상에 유출된 유류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방제분담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다. 2007년 안면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보듯이, 방제능력 미흡이 환경오염 등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유류에 대한 방제분담금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검토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위험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이 해상에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들에게 HNS방제에 필요한 기자재와 요원 확보 등의 방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방제장비 등을 갖추기도 하지만, 민간 전문방제업체에 이런 HNS방제를 위탁하기도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해 시행초기에는 정부에서 부담금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정부에서는 법적인 규정만을 제시하고 일본처럼 민간에서 자체적인 방제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도 유류 방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듯이, 유해화학물질 방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정한 방제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본 소고에서는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중에서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재난을 관리하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보험제도의 활용, 부담금제도의 강화, 수수료 수입을 통한 안전 강화 등은 모두 결국에는 비용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안전관리 강화는 그만큼 사회적인 부담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14. 2. 17.
 기획재정부,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4.
 부담금운용평가단, 『부담금 평가』, 2011.
 소방방재청, 『2012년 재난연감』, 2013.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추진현황」, 보도자료, 2014.2.24.
 홍성훈·강성훈·허경선,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원내세미나자료, 2014. 11.

〈부록〉 안전과 관련된 부담금 기본내역

기관	설치연도	부과목적	부과요건 및 요율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1973년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총당	- 손해보험회사: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 보험료 총액의 0.2%의 범위 안에서 화재 예방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사원총회에서 의결)을 출연(시행령 제10조 제2항)
광해방지사업자 부담금	2005년	- 광해방지사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광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해발생 직접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지속가능한 광산개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부과	-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광해방지사업) 또는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신고), 허가기간 재연장에 따른 재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때(산림·토지복구사업) 광해방지의무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과 -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30%를 부과 - 산림(토지)복구사업은 복구비 예치 총액의 30~60% 사이의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
안전관리 부담금	1997년	-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	-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및 액화석유가스나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 부담요율: 액화석유가스(LPG) 1kg당 4.5원, 액화천연가스(LNG) 1㎡당 3.9원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2010년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각 선사별 독자적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 내항여객 운송사업자: 내항여객 운송사업자의 여객운임액의 3.5%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1986년	-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규제사업이 필요하게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에 필요한 제원 마련	- 발전용 원자로시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 폐기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 심·검사 - 발전용원자로사업자: 1,571,652천원/기 - 기타사업자: 336,200원/투입인력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2008년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 후 핵연료 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 원자력발전소 연료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원자로에서 인출하여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될 때 사용 후 핵연료에 부과하며, 납부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임 - 부담금=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분기별 발생량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부담금 직립액)× 1/미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의 현재가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1992년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 지원	- 의약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를 받은자 또는 수입자 - 공급가의 0.018~0.047%

〈부록〉의 계속

기관	설치연도	부과목적	부과요건 및 요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구제금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인 사업장(단, 건설업은 모든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 석면피해 구제분담률 - 석면피해 구제특별분담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인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대상.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5.5% 금액 × 업체별 허가량 누계 비율 (특별분담금)
방제분담금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당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배치의무자에게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우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조선을 제외한 선박,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조선(내항선(4.8원), 외항선(13.6원))의 부과기준은 선박통톤수기준 1톤당 계산되며, 매1회 임항할 때마다 부과 · 유조선 외의 선박(내항선(2.4원), 외항선(6.8원))의 부과기준은 선박통톤수기준 1톤당 계산되며, 매1회 임항할 때마다 부과 · 기름저장시설: 유류수령량 100t/마다 7.2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197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유자를 할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으로 전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 장애인이 재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유자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나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 -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 1.0%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및 참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월드컵을 중심으로

I. 서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ungmunc@kipt.re.kr)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안이 언론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모든 경기장은 서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2월 8일 모나코 총회에서 분산 개최 가능성 등을 포함한 ‘Agenda 2020’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첫 번째 적용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동계(2018년 평창) 및 하계(2020년 도쿄) 올림픽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 즉 맞교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일본과의 올림픽 분산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 국내 분산 개최 또는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한 북한과의 분산 개최 방안을 두고서도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분산 개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IOC도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는 없다고 선언하며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IOC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분산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국가 또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어오는 위기감과 함께 재정문제로 경기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평창의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던 나라 중 최근 오슬로가 네 번째로 유치를 철회했다. 주민들의 강렬한 반발 때문이다. 올림픽 유치가 국가 또는 도시의 영광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올림픽 개최 이후 재정난을 겪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다들 올림픽 개최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그리스는 아테네 올림픽으로 1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재정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 소치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53조원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시설관리 비용만 한 해 2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캐나다 밴쿠버 역시 11조원의 적자

1)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81278

“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는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크게 부풀려서 발표하곤 한다.
 그러나 개최 이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사전 전망과 크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

를 기록했고, 시드니, 나가노 등 많은 올림픽 개최 도시가 올림픽 이후 재정난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 국가는 개최 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림픽의 저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인천시는 아시안 게임을 치루기 위해 1조 4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²⁾ 특히 인천시는 문학경기장을 보수해서 사용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4,722억원을 들여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을 신설했다. 이는 재정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인천시 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만을 부각시킨 결과이다. 즉 신설 경기장이 들어설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표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치러진 2010년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이 지역의 재정형편을 악화시켰으며, 앞으로 치러질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도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4,285억원을 들여 건설한 전남 영암의 F1 경기장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전라남도도 F1 운운사

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에 개최권료 인하를 요구했다가, 2014년 F1 일정에서 한국이 빠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으며, 최근 2015년 일정에서도 빠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른 종목에 비해 개최 후 경기장 활용의 문제는 덜 하지만, 월드컵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³⁾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12조원을 지출했으며, 월드컵 기간을 전후하여 월드컵 개최를 반대하는 브라질 국민들의 시위 장면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2년 월드컵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성공적인 대회였지만, 현재 월드컵 경기장 중 다섯 곳은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⁴⁾

이렇듯 대부분의 국제스포츠행사는 개최 국가 또는 도시에 큰 재정부담을 안겨주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 국제행사 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와 도시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관광, 수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려는 국민들의 희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재임 기간 중 업적을 남기려는 정치인의 욕심도 분명 있을 것이다. 과연 대구시민들이 육상대회를 얼마나 개최하고 싶었으며, 충주시민들이 조정대회를 얼마나 개최하고 싶었고, 문경시민들이 군인체육대회를 얼마나 개최하고 싶었을까? 지자체장이 말을 꺼내기 전에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는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크게 부풀려서 발표하곤 한다. 유치 단계에서는 비용보다 수익이 훨씬 크다는 전망을 내놓지만, 개최 이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사전 전망과 크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동·하계 올림픽이

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6/2014102600918.html

3) Baade and Matheson(2004)에 따르면 1994년 미국 월드컵의 경우 40억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55억~93억달러의 손실을 안겨주었다.

4)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008330012>

열렸던 아테네, 베이징, 런던, 토리노, 밴쿠버, 소치 등이 좋은 예이다. 개최 전에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경기장 건설 비용들은 당초 계획을 훨씬 뛰어넘고, 개최로 인한 수익은 예상보다 저조해 큰 적자와 빚을 남기게 되었다. 게다가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지 못한 경우 경기장 유지비로도 매년 큰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스포츠경제학의 대가인 Matheson의 2006년, 2009년 논문에 따르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국제스포츠행사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때 허술한 방법론 또는 의도적인 왜곡으로 실제보다 경제적 효과를 크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관광객 수 및 그들의 지출을 과도하게 추정하며, 지나치게 큰 승수(multiplier)를 사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⁵⁾

과연 이렇게 큰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국제스포츠행사가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국제스포츠행사 개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국가 이미지의 홍보, 관광수입 증대 등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 특히 GDP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좀 더 넓게 분석해 보기 위해 개최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월드컵이다. 월드컵은 올림픽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가장 인기 있는 국제스포츠행사일 뿐만 아니라, 메달 수로 순위를 집계하는 올림픽과 달리 토너먼트 승부로 인해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참가국의 성적이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지게 된다.

“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 개최와 참가 성적이 경제,
구체적으로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인
소비,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

II. 월드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 개최와 참가 성적이 경제, 구체적으로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GDP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인 소비,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분석하였다.

1. 데이터 및 방법론

우선 연구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에서 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된 36개국과 BRICs 4개국 중 1990년과 2014년 사이 월드컵에 1회 이상 참가한 26개국이다. <표 1>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국가를 1990년과 2014년 사이 월드컵 참가 횟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5) Baade and Sanderson(1997)은 스포츠행사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또한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

회귀분석 결과

8강 진출 변수의 계수가 1.5이고,
4강 진출 변수의 계수가 0.5라고 해서
8강까지만 진출하는 게 4강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4강 진출했을 경우 8강에 진출한 효과에 더해
0.5만큼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

〈표 1〉 연구에 포함된 국가 분류

1990~2014년 사이 월드컵 참가 횟수	국가
7회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미국
6회	네덜란드, 잉글랜드 ¹⁾
5회	벨기에, 프랑스, 일본
4회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3회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2회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1회	중국, 뉴질랜드

주: 1)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나누어 축구 리그를 운영하며 국제대회에도 따로 참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경제 변수와 잉글랜드의 월드컵 변수를 한 국가의 것으로 취급하였음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크게 경제 변수와 월드컵 변수로 나눌 수 있다. 경제 변수로는 1989년부터 2013년 사이 각 국가의 연도별 GDP성장률, 소비성장률, 수출성장률, 수입성장률, (미국달러 대비) 평균 환율성장률 및 세계경제성장률이며, 월드컵 변수로는 같은 기간 동안의 월드컵 참가 및 성적에 대한 변수와 월드컵 개최에 대한 변수를 포함시켰다. 이 중 연간

GDP성장률, 소비성장률, 수출성장률, 수입성장률은 각 분석별 종속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모든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독립변수로 이용되었다.

국가별 연간 GDP성장률과 세계GDP성장률은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를 이용하였으며, 소비 및 수출과 수입의 연간 성장률은 OECD의 National Accounts를 이용하였다. 환율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 나타난 미국 달러 대비 각 화폐의 연도별 연중 평균 환율을 이용하였다.⁶⁾ 월드컵 개최와 성적에 관한 데이터는 인터넷의 여러 자료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표 2〉에서는 각각의 분석에 종속변수로 쓰인 네 가지 변수를 소개하였다. 〈표 3〉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월드컵 관련 변수들과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월드컵 8강 진출에서 8강에서 탈락한 국가는 월드컵 참가, 16강 진출, 8강 진출 변수는 각각 1의 값을 가지며, 4강 진출, 결승 진출, 우승 변수는 각각 0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각각의 변수에 대한 계수는 전단계에서 현단계로 진출했을 경우 추가로 나타나는 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귀분석 결과 8강 진출 변수의 계수가 1.5이고, 4강 진출 변수의 계수가 0.5라고 해서 8강까지만 진출하는 게 4강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4강에 진출했을 경우 8강에 진출한 효과에 더해 0.5만큼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월드컵 개최에 관한 변수의 경우 월드컵 개최연도 이전 또는 이후에도 경기장 건설, 국가 이미지 홍보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월드컵 개최 연도 변수에 더해 개최 전년, 개최 후년 변수를 추가하였다.

6) 따라서 환율상승률이 양수(+)인 경우 화폐가치는 하락한 것이다.

〈표 2〉 분석별 종속변수

	관측수 ¹⁾	평균	표준편차
GDP성장률	630	2.64	3.19
소비성장률	531	2.31	2.90
수출성장률	531	5.32	6.14
수입성장률	531	5.28	7.58

주: 1) GDP성장률의 경우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가 존재하지만(모든 나라에서 198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가 존재했다면 관측수는 650(=26(국가수)×25(연도수)), 소비,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1990년대 또는 2000년대부터 자료가 존재하기에 관측수가 GDP성장률에 비해 적음

〈표 3〉 월드컵 관련 변수

	설명
월드컵 참가 ($participate_{i,t}$)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을 참가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16강 진출($round16_{i,t}$)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16강에 진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8강 진출($round8_{i,t}$)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8강에 진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4강 진출($round4_{i,t}$)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4강에 진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결승 진출($final_{i,t}$)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결승에 진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우승($winner_{i,t}$)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에 참가하여 우승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았을 경우 0
월드컵 개최($host_{i,t}$)	i국가가 t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월드컵 개최 1년 전 ($host_before_{i,t}$)	i국가에게 t년도가 월드컵 개최 1년 전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월드컵 개최 1년 후 ($host_after_{i,t}$)	i국가에게 t년도가 월드컵 개최 1년 후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분석 방법은 각 국가의 연도별 변수를 포함시킨 패널회귀분석이며 분석별로 연간 GDP성장률, 소비성장률, 수출성장률, 수입성장률 중 한 변수가 종속변수이며, 독립변수로는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에 관한 변수와 환율변수, 세계경제성장률, 그리고 종속변

수의 시차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를 포함시켰다.

2. 분석 결과

가.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GDP에 미치는 영향

우선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간 GDP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난 연도의 GDP성장률과 앞서 설명한 월드컵 개최 및 참가에 관한 변수, 환율과 세계경제성장률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4〉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p-value
지난 연도 GDP성장률	0.467***	0.055	0.000
월드컵 참가	0.154	0.511	0.766
16강 진출	0.573	0.659	0.392
8강 진출	0.692	0.587	0.250
4강 진출	0.018	0.702	0.979
결승 진출	-1.617	1.154	0.174
우승	1.650	1.285	0.211
월드컵 개최	0.403	0.696	0.568
월드컵 개최 1년 전	0.172	0.405	0.675
월드컵 개최 1년 후	-0.259	0.733	0.727
환율 상승률	-0.001**	0.000	0.016
세계GDP성장률	0.951***	0.101	0.000
Number of observations	626		
Number of groups	26		
R(overall)	0.5398		

주: ***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함

“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 개최
 또는 참가 성적은 GDP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점이다.**
 ”

회귀분석 결과 예상대로 지난 연도 GDP성장률과 이번 연도 GDP성장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성장률이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율이 하락할수록, 즉 화폐 가치가 상승할수록 GDP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효과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경제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 개최 또는 참가 성적은 GDP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월드컵 관련 변수들이 경제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월드컵 관련 변수들이 GDP 구성요소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여 합쳤을 때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 관련 변수가 GDP뿐만 아니라 소비,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나.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GDP 구성요소 중 소비는 특히 심리적인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를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월드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으로 볼 때 월드컵을 개최하거나 월드컵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낸 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월드컵의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연간 소비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표 5>는 패널회귀 분석 결과이다.

<표 5>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소비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p-value
지난 연도 소비성장률	0.384***	0.057	0.000
월드컵 참가	-0.079	0.592	0.896
16강 진출	0.185	0.558	0.743
8강 진출	0.851**	0.393	0.040
4강 진출	-0.253	0.827	0.762
결승 진출	-1.407	1.239	0.268
우승	1.518	1.223	0.227
월드컵 개최	0.972	0.629	0.135
월드컵 개최 1년 전	0.548	0.523	0.305
월드컵 개최 1년 후	-1.669	1.426	0.253
환율 상승률	-0.035***	0.0113	0.005
세계GDP성장률	0.529***	0.099	0.000
Number of observations	514		
Number of groups	25		

주: ***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함

회귀분석 결과 예상대로 지난 연도 소비성장률과 이번 연도 소비성장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성장률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환율이 하락할수록, 즉 화폐 가치가 상승할수록 소비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 8강에 진출할 경우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8강에 이어 4강, 결승에 진출할 경우 추가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조적으로 월드컵 개최와 관련된 변수는 소비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보다 월드컵에 참가하여 8강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월드컵에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 것이다. 능력 있는 감독을 영입해야 하며, 선수들의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유망주를 육성하며, 국내리그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월드컵 개최에 드는 비용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칫 잘못하여 월드컵을 개최해 놓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 한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남들에게 파티장소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여름 홈에서 독일에 7대 1로 대패한 브라질 국민들이 느끼는 바일 것이다.

다.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국가 홍보일 것이다.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력을 자랑하고 국가의 브랜드가치 또는 네임밸류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경제 분야가 수출일 것이다. 국가의 이름이 홍보되고,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릴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최가 유일한 홍보수단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최보다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10년 월드컵 결승에서 당시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던 무적함대 스페인이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를 연장 접전 끝에 1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여 스페인 축구 황금세대(golden generation)의 정점을 찍은 장면을 많은 축구팬들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가 어디였는지 물어보면 주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남아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월드컵으로 인해 남아공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을 수

“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보다
월드컵에 참가하여 8강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월드컵에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월드컵 개최에 드는
비용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도 있지만, 월드컵 당시 보도된 범죄 등 위험한 치안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오히려 나빠졌을 수도 있으며, 이는 오히려 남아공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의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연간 수출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표 6>은 패널회귀분석 결과이다.

“
**늘어난 소비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의 구입이었을 경우,
 늘어난 소비가 국내생산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

〈표 6〉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수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p-value
지난 연도 수출성장률	0.161***	0.049	0.003
월드컵 참가	1.538*	0.847	0.082
16강 진출	0.044	1.648	0.979
8강 진출	0.404	1.569	0.799
4강 진출	2.285*	1.233	0.076
결승 진출	-2.947	1.903	0.135
우승	1.268	2.324	0.590
월드컵 개최	2.182	1.288	0.103
월드컵 개최 1년 전	-1.634	2.397	0.502
월드컵 개최 1년 후	2.123	1.456	0.158
환율 상승률	0.055***	0.011	0.000
세계GDP성장률	2.804***	0.278	0.000
Number of observations	514		
Number of groups	25		
R(overall)	0.4322		

주: ***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함

회귀분석 결과 예상대로 지난 연도 수출성장률과 이번 연도 수출성장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할수록, 즉 화폐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 자체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4강에 진출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월드컵 개최 변수의 경우 p값이 10.3%이므로 비록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수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월드컵 참가, 4강 진출, 월드컵 개최 변수 중 어느 것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기에, 이 같은 변수들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주목할 점은 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보다 월드컵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월드컵에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개최와 성적 사이에서 국가를 홍보하고, 수출을 늘리기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각각의 경우에 따른 투자와 효과를 잘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월드컵 개최와 참가 성적은 경우에 따라 소비와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수입의 증가이다. 월드컵 개최와 좋은 성적으로 인한 심리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구입의 증가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늘어난 소비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의 구입이었을 경우, 늘어난 소비가 국내생산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드컵의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연간 수입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표 7〉은 패널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7〉 월드컵 개최 및 참가 성적이 수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p-value
지난 연도 수입성장률	0.119**	0.050	0.025
월드컵 참가	0.862	1.268	0.503
16강 진출	0.661	1.556	0.675
8강 진출	5.550**	2.522	0.038
4강 진출	-4.096	2.663	0.137
결승 진출	-3.413	2.817	0.238
우승	-0.498	4.703	0.917
월드컵 개최	4.327*	2.489	0.095
월드컵 개최 1년 전	1.995	2.371	0.409
월드컵 개최 1년 후	-0.377	1.679	0.824
환율 상승률	-0.066	0.039	0.105
세계GDP성장률	3.334	0.253	0.000
Number of observations	514		
Number of groups	25		
R(overall)	0.4210		

주: ***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함

회귀분석 결과 예상대로 지난 연도 수입성장률과 이번 연도 수입성장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성장률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할수록, 즉 화폐가치가 상승할수록 수입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10% 수준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할 경우 수입증가율이 커지게 되며, 월드컵을 개최할 경우에도 수입증가율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월드컵 개최 또는 8강 진출은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수요 또한

“
 월드컵 개최 또는 참가 성적은 GDP의 구성요소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GDP성장률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커지게 된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마. 요약 및 분석의 한계점

본 장에서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월드컵 개최 또는 참가 성적은 GDP의 구성요소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GDP성장률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우선 가장 큰 한계점으로는 표본의 크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26개국의 25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충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 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를 살펴보면 발생빈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월드컵은 7번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국가 또한 6개국에 불과하다.⁷⁾ 반면 월드컵에 참가한 경우, 16강에 진출한 경우는 개최 또는 우승의 경우보다 훨씬 많기에 회귀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추정되었을 확률이 높다.

또한 본 연구는 GDP 관련 변수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부분적으로 개최지의 관광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도가 증진되었을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7) 브라질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1990년 월드컵부터 2010년 월드컵까지 7회의 월드컵 중 1994년과 2002년 두 번 우승을 차지하여 그 기간 중 총우승국은 6개국이다.

“
**전 세계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행사인 월드컵조차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최보다는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인한 다양한 이익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인한 효과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 개최 전 국가의 이미지, 스포츠 시설 확충 정도에 따라 비용 및 효과가 상이할 수 있지만, 다양한 국가들의 이 같은 상세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분석 결과는 단순히 효과의 평균치만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이벤트 국가가 평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는 추정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의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이 같은 분석으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월드컵의 경우 다른 스포츠이벤트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들은 도시에서 개최한다. 하지만 월드컵의 경우 국가에서 (또는 한일 월드컵처럼 두 국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즉 도시에서 개최하는 경우 개최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지면 해당 지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재원을 요청하려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어쩔 수 없이 지방정부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한다면 지자체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행사를 무리해서 개최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이러한 점이 현재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지자체들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분석하려면 국가 행사인 월드컵보다는 지역 행사인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이 더 적합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국가 행사인 월드컵은 다른 지역 행사와는 효과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싶은 가능성은 분명하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행사인 월드컵조차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최보다는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스포츠행사 개최를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다시 한 번 엄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경제적 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효과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서울이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을 겪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라인줄만 알았던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88서울올림픽을 통해 외국인들의 머리와 가슴에 확실히 인식시켜준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도 더 이상 세계의 변방 국가가 아니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이제는 세계일류 브랜드가 된 대한민국의 국력을 널리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한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도 큰 행복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과 TV를 생산해 내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 소니(Sony)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란 선진국 청소년들이 이제 한국 노래를 들으며, 한국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라고 있다. 굳이 국제스포츠행사를 통해 국력을 과시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리고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 아테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그들을 모시는 신전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인간의 본질에 대해 논하는 장면일 것이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 또는 희망봉과 케이프반도의 멋진 풍경일 것이다. 아테네 올림픽 또는 남아공 월드컵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은 멋진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이다. 다만 20세기 초반 일제 침략, 20세기 중반 전쟁, 20세기 후반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에 대해 우리 스스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 했고, 따라서 당연히 외국인들에게 알릴 기회도 많지 않았다.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고, 외국인들의 큰 관심도 얻지 못하는 국제행사 대신 우리 본연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재발굴하고 재조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도 더 큰 일이 아닐까?

물론 스포츠산업도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큰 즐거

“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효과에 대한 분석을 엄밀히 수행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움을 주며, 시장규모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산업 육성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국제행사 개최는 아닐 것이다. 축구팬들이 바르셀로나를 찾는 이유가 FC바르셀로나의 경기장이 비싼 돈을 들여 지었기 때문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직접 보고, 축구가 삶의 중요한 일부분인 바르셀로나의 문화를 느껴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할 비용으로 유소년 유망주를 육성하고, 국내 리그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회성 대회 유치보다 국민행복증진 및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스포츠행사 개최를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다. 잘만 활용한다면 경제적 효과도 뛰어날 수 있고, 국가홍보 효과, 국민행복증진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인들의 업적을 쌓기 위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효과에 대한 분석을 엄밀히 수행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행사를 위해 건설된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도 개최 후가 아닌 유치 단계에서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거쳐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할 경우 국가 이미지가 더욱더 홍보되며,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ade, Robert A., and Victor A. Matheson. "The quest for the cup: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World Cup," *Regional studies*, 38(4), 2004, pp. 343~354.
- _____, and Allen R. Sanderson. "The employment effect of teams and sports facilities," *Sports, Jobs, and Taxes: The Economic Impact of Sports Teams and Stadiums*, 1997, pp. 92~118.
- Matheson, Victor, "Mega-Events: The effect of the world's biggest sporting events on local,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e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College of the Holy Cross, 2006.
- Matheson, Victor. "Economic multipliers and mega-ev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Finance*, 4(1), 2009, pp. 63~70.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5-01

요약

-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업상속공제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제도 중 일부 요소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판결을 하였으며 2016년 중순까지 법 개정을 정부에 주문함
 - 2012년 독일연방재무법원은 기업상속공제제도 중 일부 요소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음
 - 본 판결은 2012년의 제청에 대한 판결의 결과이며 평등권 침해 요소 이외에 대규모 공제의 필요성 검토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특혜 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스페인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이전가격세제 정비와 대리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함
 -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 관계 실체 범위에 대한 정비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대리납부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업종과 시행방법을 제정한 것임
- 이탈리아는 세계개정 내용을 포함한 재정안정법령(Stability Law 2015)을 2014년 12월 29일에 공포함

- 개인소득세 등 직접세 규정 개정, 부가가치세율 조정 및 국제조세회피 방지 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일본 내각은 2015년 1월 14일에 2015년 세계개정안을 승인함
 - 2015년 세계개정안은 경제활성화, 재정건전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저축계좌의 한도 및 가입대상 확대, 증여세 비과세 확대, 출국세 신설, 법인세율인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담고 있음
- 중국 재정부와 과세관청은 2014년 12월 25일 기업구조 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지침은 재세 109호와 2014년 12월 31일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지침인 재세 116호를 공개함
 - 재세 109호는 양수도 기업 간 지분비율, 매각가액, 거래목적, 사업유지, 회계상의 손익 미인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기업은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세 116호는 거주자가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최대 5년까지 균등하게 이연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재정부는 2014년 12월 22일 세제혜택을 재정비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인 재에 415호를 공개함
 - 재에 415호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2014년 12월 1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세제혜택에 대해 조

사를 수행하여 법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 혜택들은 2014년 12월 1일부로 폐지하고 보고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세제혜택들은 취합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함

- 싱가포르 과세관청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된 이전가격지침을 공개함
 - 지침은 2006년 2월의 첫 번째 지침과 이에 따른 부가지침 등을 통합한 두 번째 지침이나 새로운 구체적인 개념과 절차 등을 도입함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 문서화의 시기 및 별칙, 납세협력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 등을 담고 있음

1. 독일 - 기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법 중 일부 요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¹⁾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7일 기업상속공제제도 중 공제범위에 관한 요소들이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결함
 - 헌법재판소는 기업상속공제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공제범위에 대한 요소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함
 - 그리고 2016년 상반기 내에 불합치하는 요소 등을 개정하도록 주문함
- 동 판결은 2012년 연방재정법원(Federal Court of Finance)의 위헌법률심사제청에 대한 것임

- 연방재정법원은 현행 기업상속공제가 일부 납세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청함

- 위 위헌법률심사제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기업상속공제가 일반적인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점
 - 현 기업상속공제는 회사 자산, 농업 또는 산림업 자산, 공동출자 회사의 지분의 취득에 대해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
 - 기업상속공제의 조건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85~100%까지 공제가 가능함
 - 둘째,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 현행 기업상속공제는 사업용 자산을 규정하는 권리를 남용하여 개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포함시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위험성이 있음
 - 피상속인(고인)이나 기증자는 임의로 그의 사적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하여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적인 자산도 상속·증여세를 감면받게 됨
 - 수동적 자산(passive asset)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만 되면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그 자산들을 수동적 자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증여세를 감면 받음
 - 셋째, 독일은 상속·증여세법 13a조와 13b조의 조세혜택에 이외에도 16조에서 일반적인 비과세 범위

1)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61222.pdf/\\$file/TT761222.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61222.pdf/$file/TT761222.pdf)



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재정법원은 과세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함

- 즉, 상속세는 규정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과세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사문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함

■ 일부 헌법불합치 요소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업운영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 자체는 합헌인 것을 인정하고 있음

•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업상속공제제도가 회사의 승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일자리의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헌임을 인정하고 있음

- 기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5~7년간 제도에서 정하는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그리고 정부가 현재의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행 기업상속공제제도가 유효하다고 결정함

- 한편, 개정될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정부에 부여함

■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기업상속공제제도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 정부는 사적재산을 사업재산과 분류하여 상속하는 법을 2013년에 입법하였지만 법원은 동 법을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함

■ 평등권 침해사항 이외에도 연방헌법재판소는 한 실체에 대한 대규모 기업상속공제의 필요성 검토 및 소규

모 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특혜 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현행 상속세법이 세액공제가 큰 실체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인 이하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공제 관련 규정준수사항 이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2. 스페인-이전가격세법 개정 및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²⁾

■ 스페인 정부는 2014년 12월에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여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전가격세제 및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에 대한 후속 개정이 있었음

가. 이전가격세제 개정

■ 이전가격규정을 적용받는 두 관계사 간의 지분을 조건을 완화함

• 기존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 적용하였던 이전가격규정을 지분을 25% 이상 소유할 경우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범위를 완화함(관계회사로 공시한 경우에는 지분을 1% 이상 소유할 경우 이전가격규정을 적용함)

■ 기업이 이사(director)에게 지급하는 업무 관련 급여를 이전가격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

2)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5-01-12_es_1.html&WT.z_nav=Navigation&colid=4913

- 이전가격규정 적용 대상에서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급여는 제외하나 복리후생비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이사는 자신의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급여의 산정 및 지급에 있어서 법적으로 규제가 있음

■ 이전가격 적용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

- A회사와 B회사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있을 때 B회사의 주주 또는 투자자를 A회사와 관계있는 회사로 간주하는 규정이 삭제됨
- 법의 적용을 일원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기업과 그 기업의 스페인 소재 고정사업장을 이전가격적용 대상 실체에서 제외함
 - 그러나 고정사업장과 그 고정사업장의 본사 간 거래는 스페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세법(non-resident income tax)의 적용을 받아 관계회사 간의 거래로 간주됨
- 협동조합세제를 적용받아 과세되는 기업을 제외함

나. 대리납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15년 세법개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대리납부에 대한 개정임

- 동 개정은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 물품의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여함
 - 휴대폰, 콘솔게임,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의 공급을 하고 있는 재판매업자들을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자로 정하여 의무를 부여함

- 대리납부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방식과는 달리 물품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무관청에 신고 · 납부하는 방식임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 납부는 물품을 매출한 사람이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관청에 일괄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또한 대리납부 의무를 지닌 재판매업자에게 매출규모에 대한 고지 및 증명을 세무관서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 정부는 실제로 매출의사가 있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재판매업자를 대리납부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고지와 증명을 의무적으로 하게 함

■ 세무부서는 관련 업체가 지방세무관서에 대리납부에 관한 등록증을 접수하면 대리납부 수행능력을 보증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확인서를 발급할 것임

-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관련 업체는 매년 갱신을 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3. 이탈리아의 조세 개정 법령 공포³⁾

- 이탈리아는 세제개정 내용을 포함한 재정안정법령 (Law No. 190 of 23, December 2014, the “Stability Law 2015”)을 2014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함
 - 동 법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조세 분야에서는 주로 직·간접세 및 국제조세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직접세(direct tax) 항목은 주로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및 연금 등 개인소득세 위주의 개정 내용으로 구성됨
 -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이탈리아에서 업무를 시작한 연구인력(researcher)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생산활동에 대한 지방세(‘IRAP’)를 전액 감면함
 -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펀드에서 발생한 연 순소득(yearly net result)의 9%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를 적용함
 - IRAP 납세자로서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IRAP 세액의 10%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납세자가 세부 주식 종류에 따라 4% 또는 8%의 대체세(substitute tax)를 납부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step-up)할 수 있도록 함
 -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meal voucher)을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 1일당 5.29유로 또는 7유로(전자식권 형태로 발급시)까지는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타 해외 고용소득, 연금, 생명보험금 등에 대한 과세방침 일부 조정 등
- 간접세(indirect tax) 항목에 대한 개정 사항은 주로 부가가치세율 조정 및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변경 등으로 이루어짐
 - 대리납부(reverse charge) 대상 확대: 청소업, 플랜트 설치 및 빌딩미장업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온실가스배출권 양도 및 가스·전기 증명서(gas and electricities certificates) 공급 등의 경우에는 4년간 대리납부 방식을 적용함
 - 현재 실행 중인 재정지출삭감안이 목적 달성에 실패할 경우 현행 22%인 부가가치세율을 2018년 25.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
 - 2016년 1월 1일부터: 24%
 - 2017년 1월 1일부터: 25%
 - 2018년 1월 1일부터: 25.5%
 - 전자책(e-books), 목재펠릿(wood pellet) 공급 및 관광숙박업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조정 등
-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들을 강화함
 - 이탈리아 거주자가 사전에 인정된 국가 목록(while list)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납세자가 다음의 사항을 입증하지 않는 한 비용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i) 거래상대방인 비거주자가 실제 사업활동(real business activity)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 ii) 당해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실질적인 사업 목

3) www.ibfd.org 및 www.deloitte.com 참조

적하에서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사실

-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과세 수준에 비해 5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를 저세율국가(low-tax jurisdiction)로 정의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4. 일본-2015년 예산안 각의 결정

- 일본 내각은 2015년 1월 14일에 2015년 세제개정안을 승인함⁴⁾
 - 2015년 세제개정안은 경제활성화, 재정건전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제도 등을 고려하고 있음
 -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한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 회복을 위한 법인세 개혁, 주택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 강화, 결혼·육아 지원 등의 경제 활성화 반영
 - 경제 활성화 측면과 더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
 - OECD BEPS 프로젝트 등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국제적 조화방안 강구

가. 소득세

- 비과세되는 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s: NISA)의 가입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허용함
- NISA의 상장주식 등의 투자한도를 현행 100만엔에서 2016년부터 120만엔으로 상향 조정함

- 미성년자의 경우 매년 80만엔의 상장주식 등의 투자로부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하는 배당과 자본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함

- 국외로 이주하는 일본 거주자들에 대해 출국 시 자산이 결제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신설함
- 이주 시 1억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10년 중 5년 이상을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가 대상임
 - 이주라 함은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함
- 금융상품은 유가증권, 조합(匿名組合) 출자지분, 신용거래, 미결제파생상품 등을 포함함
- 다만 이주한 거주자가 이주 후 5년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에 따른 과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음

나. 증여세(자산과세)

-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하고 결혼·육아 자금의 증여에 대해 비과세함
-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구입, 교육 등을 위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하는 적용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함
 - 주택구입자금은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에너지절약등급에 따라 3백만엔에서 3천만엔까지 비과세
 - 교육자금은 15백만엔까지 비과세⁵⁾
-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개인이 결혼·육아에 대한

4) 財務省, 「平成27年度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月 14日.

5) J. Dodds & M. Murata, Japan-Individual Taxation sec. 5., Country Surveys IBFD.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신탁을 통해 수익권을 증여받는 경우 월 1천만엔(결혼은 3백만엔)까지 비과세함

- 2015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증여분에 한함

다. 법인세

-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 등의 경감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현행 25.5%의 법인세율을 23.9%로 2015년 4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인하함
 - 중소기업·공익법인·협동조합의 소득 8백만엔 이하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15%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7년 4월 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 적용함

〈표 1〉 법인세율

		현행	개정안
일반법인		25.5%	23.9%
중소기업 등	소득 8백만엔 이하	19.0% (경감세율 15.0% 적용)	19.0% (경감세율 15.0% 적용)
	소득 8백만엔 초과	25.5%	23.9%

자료: KPMG, "Outline of the 2015 Tax Reform Proposals," 6 January 2015, p. 2.

- 법인사업세(지방세) 세율을 2015년과 2016년에 순차적으로 인하함
 - 자본금이 1억엔 인상이 법인에게만 해당

〈표 2〉 지방 법인사업세 표준세율(소득기준의 경우)

(단위: %)

	현행	2015년	2016년
연 4백만엔 이하	3.8 (2.2)	3.1 (1.6)	2.5 (0.9)
연 4백만엔 이상 8백만엔 미만	5.5 (3.2)	4.6 (2.3)	3.7 (1.4)
연 8백만엔 초과	7.2 (4.3)	6.0 (3.1)	4.8 (1.9)

주: 괄호안 세율은 지방법인 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 적용 후 세율임
자료: 財務省, 「平成27年度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월 14일, p. 54.

- 따라서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도쿄의 경우 현행 34.64%에서 2015년 33.10%, 2016년 32.34%로 인하됨⁶⁾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율을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연장함
 - 현행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8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65%로, 이후 기간은 50%로 낮춤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 요건을 강화하고 익금불산입 비율을 하향 조정함
 -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액 100%를 익금불산입하는 요건을 주식보유비율 25% 이상에서 3분의 1 초과로 강화하고 5% 초과 3분의 1 이하 보유 시 배당금액의 50%를 익금불산입함
 - 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비율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6) PriceWaterhouseCoopers, "2015 Tax Reform Proposal," Japan Tax Update, January 2015, p. 2.

- 외형표준과세의 형태의 법인사업세(지방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함
 - 과세대상은 자본금이 1억엔 이상인 법인이며 부가가치와 자본금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0.48%, 0.20%에서 2015년 0.72%, 0.3%, 2016년 이후 0.96%, 0.4%로 인상함
 - 지방정부는 위의 표준세율에 최대 1.2배까지 부과할 수 있음⁷⁾
-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거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의 투자 및 고용에 대해 2018년 3월 31일까지 특별상각,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함
 - 지방재생법의 지방거점강화실시계획에 따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함
 - 건물, 구축물 및 그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이전 시 25%, 이외의 경우 15%의 특별상각을 허용함
 - 또한 취득가액에 2%에서 7%까지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되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함
 - 지방재생법의 지방거점강화실시계획에 따른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20만엔 또는 30만엔에 고용증가인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 이러한 세액공제의 합계액은 법인세액의 30%를 한도로 함

라. 국제조세

-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배당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현재 일본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이로부터의 배당의 9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이러한 배당이 세무상 외국법인의 비용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러한 비과세규정 배제는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배당부터 적용됨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시 외국법인의 유효세율을 20% 이하에서 20% 미만으로 변경함
 - 이러한 변경은 2015년 영국의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되는 것을 고려하여 변경되었다고 알려져 있음⁸⁾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5. 중국-기업구조개선 및 비화폐성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및 지방정부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비 요구 관련 지침 공개

가. 기업구조개선 및 비화폐성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중국 재정부와 과세관청(國家稅務總局,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2014년 12월 25일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지침은 재세 109호와 2014년 12월 31일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지침인 재세 116호를 공개함
 - 이러한 지침들은 중국 재정부와 과세관청이 중국

7) KPMG, *op. cit.*, p. 2.
8) KPMG, *op. cit.*, p. 15.



국무원(國務院, the State Council)의 2014년 국발(國發) 14호 「기업인수·합병시장 환경에 대한 최적화지침(國務院關於進一步优化企業兼重祖市場杯環境的意見)」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지침들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거래부터 적용됨
- 재세 109호는 2009년에 공개된 기업구조개선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지침인 재세 59호에서 최소지분취득비율과 최소자산취득비율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새로운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⁹⁾
- 새로운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조세혜택은 양수도 기업 간에 지분비율, 매각가액, 거래목적, 사업유지 및 회계상 손익미인식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분 또는 자산 양도가 이루어져야 함
 - 양수도 기업 간 완전모회사 관계이거나 다른 기업에 의해 양수도 기업모두 완전자회사인 경우이어야 함
 -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으로 이루어짐
 -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여야 함
 - 이전이 이루어진 사업이 이전 후 최소 12개월 동안 변경되지 않고 유지됨
 - 양수도 기업이 회계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 기업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양수도 기업은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양수한 지분 또는 자산은 양도기업의 장부가액으로 인식
- 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양도기업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재세 116호는 거주자가 비회폐성 자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최대 5년까지 균등하게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¹⁰⁾

- 이러한 과세이연은 2013년 재세 91호를 통해 상해 시범자유무역지구에 적용되던 것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임¹¹⁾
- 비회폐성 자산은 현금, 은행예금, 매출채권 및 화폐로 수취하는 사채 등을 의미함
- 비회폐성 자산 투자 시 공정가치와 세무상 기준가격과의 차이를 기존에는 모두 과세대상 이익으로 인식하던 것을 이연할 수 있음

9) 財政部·國家稅務總局, 「關於促進企業重組有關企業所得稅處理問題的通知」, 財稅[2014]109號, 2014年 12月 25日.
 10) 財政部·國家稅務總局, 「關於非貨幣性資產投資企業所得稅政策問題的通知」, 財稅[2014]116號, 2014年 12月 31日.
 11) BDO, "China Tax Newsletter," December 2014, p. 2.

〈표 3〉 지침에 따른 과세방법

구분	대상	과세내용
투자자	비화폐성 자산 출자로 인한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이익=투자한 자산의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투자한 자산의 세무상 기준가격 • 투자이익은 5년 내에 균등하게 실현시킴
	취득한 주식의 세무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기준가격=투자한 자산의 세무상 기준가격+매년 실현되는 투자이익 • 따라서 주식의 세무상 기준가격은 매년 조정됨
피투자자	출자받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받은 비화폐성 자산의 세무상 기준가격=공정가치

자료: KPMG, "China Tax Alert-MOF and SAT issued new regulations to encourag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with non-monetary assets," January 2015, pp. 2~3.

나. 지방정부에 대한 세제혜택 재정비 요구

- 중국 재정부부는 2014년 12월 22일 세제혜택을 재정비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인 재에 415호를 공개함¹²⁾
 - 통지는 2013년 11월 제3차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하나인 세제혜택 운영을 개선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함
 - 또한 2014년 11월 27일 공개된 국무원의 조세와 세제혜택의 명확화에 대한 통지¹³⁾를 집행하는 수단임
- 이 통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정부단위의 과세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¹⁴⁾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일부 세제혜택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며, 국제거래에서 분쟁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 통지는 국무원의 통지상의 정책에 대한 해석, 장기적

인 통제체계의 구축 및 관리, 현행 세제혜택의 정비 및 관리의 강화와 각 지방정부가 보고할 양식을 첨부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세제혜택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기업과의 약정, 합의서, 회의내용 등 모두를 포함함
- 법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혜택들은 2014년 12월 1일부로 폐지하고 보고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세제혜택들은 취합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러한 모든 절차는 2015년 3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2) 財政部, 「關於貫徹落實國務院清理規範稅收等優惠政策決策部署若干事項的通知」, 財預[2014]415號, 2014年 12月 22日.

13) 國務院, 「國務院關於清理規範稅收等優惠政策的通知」, 國發[2014]62號, 2014年 11月 27日.

14) PricewaterhouseCoopers, "Time for a compliance check-The clean-up of local tax and fiscal preferential policies," *New Flash: China Tax and Business Advisory*, January 2015, p. 1.



6. 싱가포르-개정 이전가격지침 공개

■ 싱가포르 과세관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된 이전가격지침을 공개함¹⁵⁾

• 이 지침은 2006년 2월의 첫 번째 지침과 이에 따른 부가지침 등을 통합한 두 번째 지침(the 2nd edition)으로 새로운 구체적인 개념과 절차 등을 도입함

- 이는 OECD 이전가격지침(2010)과 BEPS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한 것임¹⁶⁾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면서 3 단계 접근방법을 권고함

•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 가장 적합한 이전가격모형과 대상 당사자의 식별,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순으로 권고하고 있음

■ 거래와 동시에(contemporaneous)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함

• ‘동시에’ 문서화하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이루어진 시기에 이전가격 관련 증빙과 정보가 문서화 되어야 함

- 다만 납세협력의 부담 감소를 위해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이전가격에 대한 문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용인함

•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납세협력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는 기준금액(threshold)에 미달하는 거래를 규정함

• 특수관계자 간 재화의 매입 및 공급, 자금의 차입 및 대출, 기타 거래로 구분하여 문서화가 요구

〈표 4〉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는 금액기준

(단위: 백만싱가포르달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유형	연간 금액기준
재화의 매입	15
재화의 공급	
대출	
차입	
기타 거래 (용역손익, 로열티, 임대차손익) ¹⁾	분류별 1

주: 1) 금액범위를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은 각 분류별 합계액으로 판단됨
자료: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Transfer Pricing Guidelines(Second edition)," IRAS e-Tax Guide, 06 Jan 2015, pp. 35~36.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5)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Transfer Pricing Guidelines(Second edition)," IRAS e-Tax Guide, 06 Jan 2015.

16) Singapore-Revised transfer pricing guidelines(15 Jan, 2015), News IBFD.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리투아니아, 유로존 19번째 회원국 가입(2014.12.31.)¹⁾
 - 2015년 1월 1일부터 리투아니아가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여 유로존 국가는 총 19개로 확대
 - (공식 전환 비율) 1유로=3,45280리타스(LTL)
 - (향후 일정) 1월 15일까지 리타스와 유로화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시중은행은 1월 30일까지(우체국은 3월 1일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
- EU집행위원회, 구조적 개혁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 SGP(안정성장협약)에 적용할 새로운 지침 발표(2015.1.13.)²⁾
 - (목표) 고용 및 성장 지원에 있어 구조적 개혁, 투자, 재정책임성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으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구조적 개혁의 효율적 이행 촉진
 - 새로운 EFSI(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등과 관련한 투자 촉진
 - 개별 회원국의 경기변동을 더욱 고려함
 - (구조적 개혁 관련) 집행위원회는 구조적 개혁의 긍정적인 재정 효과를 고려할 것임

- (예방적 조치(preventive arm) 관련 국가)³⁾ ① 증대하고 ② 검증된 긍정적인 장기 효과(잠재적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포함)가 있으며 ③ 개혁이 이행되었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개혁의 효과를 고려
 - * 회원국이 발표한 구조적 개혁에 명시된 조치와 이행을 위한 타임라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부나 의회 승인 개혁 조치들은 사전적으로 자격을 얻음
 - * 중기재정목표(MTO)로부터 일시적 변동이 허용되도록 이사회에 권고하기 전에 집행위원회가 개혁을 평가함. 이러한 변동은 GDP의 0.5%를 넘을 수 없고 재정적자 기준(GDP의 3%) 준수를 위한 적절한 safety margin이 있어야 함
- (교정적 조치(corrective arm) 관련 국가)⁴⁾ EDP가 시작되었을 때 위에 설명한 구조 개혁 계획이 존재하면 집행위원회는 초과적자 조정 기한 연장을 권고할 수 있음
 - 집행위원회는 개혁을 모니터하고 이행 실패 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것임
- (투자 관련)
 - (EFSI 국가분담금 관련) 재정적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집행위원회는 분담금을 고려*해 EDP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채무기준 준수 여부 평가에는 분담금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 * 변동이 작고 일시적이며 변동이 분담금에 기인하는 경우
 - (분명하게 명시된 투자 조항) 투자를 고려해 예방적 조치 관련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중기재정목표나 합의된 재정건전화 경로에서 변동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함

1)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2860_en.htm?locale=en

2)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3220_en.htm

3) GDP 3%의 적자 기준 및 60%의 채무 기준을 준수하는 회원국

4) 적자 및 채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과다적자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의 대상인 국가



- ① GDP 성장률이 음수이거나 GDP가 잠재 GDP 이하임(생산값이 GDP의 -1.5%보다 큰 경우)
- ② 변동이 3% 적자 기준 비준수로 이어지지 않고 적절한 safety margin이 있음
- ③ 투자 수준의 효율적 증가
- ④ EU와 공동출자한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의 지출
- ⑤ 변동이 회원국의 안정화 또는 수렴프로그램 기간 내에 보정됨

• (경기변동 조건 관련)

- (예방적 조치 관련 국가) 경기불황 시 적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경기호황 시 더 많은 재정건전화 노력이 요구됨
- (교정적 조치 관련 국가) 예상치 못한 경기하강으로부터 정부 통제에 의한 예산 변화를 구별하도록 재정노력 평가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

• (향후 일정) 기존 규정의 변경이 아니므로 법률적 절차는 불필요하며 곧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예정

■ 유럽중앙은행(ECB), 채권매입프로그램 확대(양적완화) 발표(2015.1.22.)⁵⁾

- 매월 600억유로 규모의 확대된 채권매입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
 - (배경)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저(低)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함
 - (대상) 기존의 ABS(Asset-Backed Securities), 커버드 본드 등 민간 부문 채권뿐만 아니라 유로 지역 중앙정부, EU 기관 발행 채권 등 국채(sov­ereign bonds)를 매입 대상에 추가

- (기간) 2015년 3월부터 최소한 2016년 9월까지 시행

■ EU 통계청, 2014년 3분기 정부채무 발표(2015.1.22.)⁶⁾

- 2014년 3분기 말, 유로존(EA18)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는 각각 92.1%와 86.6%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0.6%p, 0.4%p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0%p, 1.3%p 증가
 - GDP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176.0%), 이탈리아(131.8%) 포르투갈(131.4%)이며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0.5%), 룩셈부르크(22.9%) 등임
 - 전분기와 비교해 18개 국가는 GDP 대비 채무비율이 감소했으며, 9개 국가는 증가, 1개 국가는 변동이 없음

5) ECB: http://www.ecb.europa.eu/press/pr/date/2015/html/pr150122_1.en.html

6)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6483082/2-22012015-AP-EN.pdf/765eba70-6a88-4771-8af7-48f6665e3c67>

〈표 1〉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2014년 3분기 정부채무

(단위: 백만달러, %)

		2013 Q3	2014 Q2	2014 Q3
EA18				
Government debt	(million euro)	8,991,420	9,261,502	9,233,370
	(% of GDP)	91.1	92.7	92.1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million euro)	259,186	262,231	259,368
	(% of total debt)	2.9	2.8	2.8
Debt securities	(million euro)	7,067,368	7,345,140	7,318,138
	(% of total debt)	78.6	79.3	79.3
Loans	(million euro)	1,664,863	1,654,133	1,655,865
	(% of total debt)	18.5	17.9	17.9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million euro)	224,513	238,540	240,534
	(% of GDP)	2.3	2.4	2.4
EU28				
Government debt	(million euro)	11,495,232	11,929,925	11,979,549
	(% of GDP)	85.3	87.0	86.6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million euro)	423,049	443,246	441,661
	(% of total debt)	3.7	3.7	3.7
Debt securities	(million euro)	9,233,391	9,655,473	9,706,121
	(% of total debt)	80.3	80.9	81.0
Loans	(million euro)	1,838,790	1,831,208	1,831,767
	(% of total debt)	16.0	15.3	15.3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million euro)	229,507	244,067	246,201
	(% of GDP)	1.7	1.8	1.8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1.22.



〈표 2〉 EU 국가별 2014년 3분기 정부채무

	% of GDP			변동(%p)	
	2013 Q3	2014 Q2	2014 Q3	2013 Q3	2014 Q2
벨 기 예	107.9	108.8	108.2	0.2	-0.7
볼 가 리 아	17.1	20.5	23.6	6.6	3.1
체 코	45.1	44.4	43.8	-1.4	-0.6
덴 마 크	46.9	45.4	47.0	0.1	1.6
독 일	76.9	75.3	74.8	-2.1	-0.5
에 스 토 니 아	10.0	10.5	10.5	0.4	0.0
아 일 랜 드	124.2	117.0	114.8	-9.4	-2.2
그 리 스	171.0	177.5	176.0	5.0	-1.4
스 페 인	91.8	96.4	96.8	5.0	0.4
프 랑 스	91.9	95.2	95.3	3.4	0.1
크 로 아 티 아	70.7	77.0	78.0	7.3	1.0
이 탈 리 아	127.8	133.8	131.8	4.0	-2.0
키 프 로 스	100.0	109.8	104.7	4.7	-5.1
라 트 비 아	38.5	41.0	40.4	1.9	-0.6
리 투 아 니 아	39.2	38.7	38.3	-0.8	-0.4
룩 섴 부 르 크	27.9	23.2	22.9	-5.0	-0.3
헝 가 리	78.4	82.9	80.3	1.9	-2.6
몰 타	72.5	74.6	71.9	-0.6	-2.7
네 달 랜 드	68.7	69.6	69.0	0.3	-0.5
오 스트 리 아	84.1	82.3	80.7	-3.4	-1.6
폴 란 드	56.6	48.4	48.6	-8.0	0.2
포 르 투 갈	127.8	129.5	131.4	3.6	1.9
루 마 니 아	38.4	37.9	38.1	0.3	0.2
슬 로 베 니 아	61.3	78.3	78.1	16.8	-0.2
슬 로 바 키 아	56.5	55.6	55.4	-1.1	-0.2
핀 란 드	54.0	58.9	58.1	4.1	-0.8
스 웨 덴	37.9	38.8	39.0	1.2	0.2
영 국	86.6	88.6	87.9	1.3	-0.8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1.22.

■ EU 통계청, 2014년 3분기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발표 (2015.1.20.)⁷⁾

- 유로존(EA18)과 EU 28개국의 2014년 3분기 GDP 대비 계절조정된 재정적자는 전분기 대비 각각 0.2%p, 0.1%p 감소한 2.3%와 2.9%를 기록
 - (EA18) 2014년 3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6.7%, 총지출은 49.1%를 기록
 - (EU28) 2014년 3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5.0%, 총지출은 48.0%를 기록

〈표 3〉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단위: %)

	2013 Q3	2013 Q4	2014 Q1	2014 Q2	2014 Q3
EA18					
재정수지	-2.9	-2.6	-2.6	-2.5	-2.3
총수입	46.7	45.5	47.6	46.6	46.7
총지출	49.6	48.1	50.2	49.1	49.1
EA28					
재정수지	-3.4	-3.0	-3.1	-3.0	-2.9
총수입	45.4	44.1	46.1	45.2	45.0
총지출	48.7	47.0	49.2	48.2	48.0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5.1.20.

■ EU 집행위원회,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올해 10억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을 제안(2015.2.4.)⁸⁾

- (내용) 집행위원회는 청년 고용 이니셔티브(Youth Employment Initiative: YEI⁹⁾)의 자금 중 우선 10억유로를 올해 안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

7)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6482998/2-20012015-AP-EN.pdf/358780cf-5aa6-445b-afe-031ebcc248bb>

8)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4100_en.htm

9) EU 집행위원회는 졸업 또는 실직 4개월 미만의 청년실업자(25세 미만)에게 양질의 일자리, 견습직,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를 발표(2012년 12월).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청년보장제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집행위원회가 European Semester 체제 안에서 이를 감독함. 2014~2020년 YEI 예산은 약 32억유로이며 회원국의 유럽사회기금 배정액으로부터 최소 32억유로가 매칭됨

- (기대효과) 올해 약 65만명의 청년고용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
 - 이로써 2015년 예산배정의 사전 자금 조달 비율(pre-financing rate)이 현행 1~1.5%에서 30%까지 증가
 - 2015년 지원 인원은 14,000~22,000명에서 350,000~650,000명으로 증가할 전망

■ EU 경제전망¹⁰⁾(2015 겨울) 발표(2015.2.5.)¹¹⁾

- (성장률) 2015년 EU 및 유로지역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2016년 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2015년 실질GDP 성장률은 유로지역이 1.3%(가을 전망 대비 0.2%p 증가), EU 회원국이 1.7%(가을 전망 대비 0.2%p 증가)로 전망
 - 대내외 수요 강화, 확장적 통화정책, 중립적 재정기조 등에 힘입어 2016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9%(가을 전망 대비 0.2%p 증가), EU 회원국 2.1%(가을 전망 대비 0.1%p 증가)로 전망
- (물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15년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억제될 전망이고 경기 강화, 임금 상승,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 감소 등으로 2015년 중반부터 2016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임
 - 2015년 EU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0.2%, 2016년 1.4%로 예상
- (실업률) 경제 성장이 모멘텀을 얻으며 일자리 창출은 가속화되지만 경제성장이 노동시장을 뚜렷하게

개선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실업률은 서서히 감소할 전망

- 2015년 실업률은 EU 지역 9.8%, 유로지역 11.2%로 전망되며 진행 중인 노동시장 개혁이 2016년에는 성과를 거두어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임

- (재정수지) 일반정부 재정적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으나 재정 기조는 현재 중립적임

- (재정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EU 회원국이 2015년 2.6%, 2016년 2.2%로 전년 대비 감소, 유로지역 또한 2015년 2.2%, 2016년 1.9%로 감소할 전망

- (채무비율) EU 회원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4년(88.4%)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88.3%로 감소, 유로지역은 2015년에 94.4%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할 전망

- (주요 리스크)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되고, 새로운 긍정적인 요인들도 나타나고 있음

- (하방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MENA¹²⁾ 지역 등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 통화 정책 차이와 관련한 금융 시장 변동성, 구조 개혁의 불완전한 이행,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¹³⁾ 등

- (상방 리스크) 유가 하락의 영향,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EU의 투자 계획 등

10) EU는 매년 3회(2월, 5월, 11월) "Economic Forecasts"를 통해 경제 전망을 발표함

11) EU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eu/forecasts/2015_winter_forecast_en.htm

12)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3)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 또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더욱 떨어뜨리며,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은 실질 이자율을 높여 민간 소비와 투자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임금 상승 둔화 등 소득에 대한 2차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전면적 디플레이션(outright deflation) 리스크가 상승해 성장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표 4〉 유로존 및 EU 28개국의 2015년 전망

(단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벨기에	0.3	1.0	1.1	1.4	1.2	0.5	0.1	1.1	8.4	8.5	8.3	8.1	-2.9	-3.2	-2.6	-2.4
독일	0.1	1.5	1.5	2.0	1.6	0.8	0.1	1.6	5.2	5.0	4.9	4.8	0.1	0.4	0.2	0.2
에스토니아	1.6	1.9	2.3	2.9	3.2	0.5	0.4	1.6	8.6	7.7	6.8	5.9	-0.5	-0.4	-0.6	-0.6
아일랜드	0.2	4.8	3.5	3.6	0.5	0.3	0.3	1.3	13.1	11.1	9.6	8.8	-5.7	-4.0	-2.9	-3.1
그리스	-3.9	1.0	2.5	3.6	-0.9	-1.4	-0.3	0.7	27.5	26.6	25.0	22.0	-12.2	-2.5	1.1	1.6
스페인	-1.2	1.4	2.3	2.5	1.5	-0.2	-1.0	1.1	26.1	24.3	22.5	20.7	-6.8	-5.6	-4.5	-3.7
프랑스	0.3	0.4	1.0	1.8	1.0	0.6	0.0	1.0	10.3	10.3	10.4	10.2	-4.1	-4.3	-4.1	-4.1
이탈리아	-1.9	-0.5	0.6	1.3	1.3	0.2	-0.3	1.5	12.2	12.8	12.8	12.6	-2.8	-3.0	-2.6	-2.0
키프로스	-5.4	-2.8	0.4	1.6	0.4	-0.3	0.7	1.2	15.9	16.2	15.8	14.8	-4.9	-3.0	-3.0	-1.4
라트비아	4.2	2.6	2.9	3.6	0.0	0.7	0.9	1.9	11.9	11.0	10.2	9.2	-0.9	-1.5	-1.1	-1.0
리투아니아	3.3	3.0	3.0	3.4	1.2	0.2	0.4	1.6	11.8	9.5	8.7	7.9	-2.6	-1.2	-1.4	-0.9
룩셈부르크	2.0	3.0	2.6	2.9	1.7	0.7	0.6	1.8	5.9	6.3	6.4	6.3	0.6	0.5	-0.4	0.1
몰타	2.5	3.3	3.3	2.9	1.0	0.8	1.0	1.9	6.4	6.0	5.9	5.9	-2.7	-2.3	-2.0	-1.8
네덜란드	-0.7	0.7	1.4	1.7	2.6	0.3	0.4	0.7	6.7	6.9	6.6	6.4	-2.3	-2.8	-2.2	-1.8
오스트리아	0.2	0.2	0.8	1.5	2.1	1.5	1.1	2.2	4.9	5.0	5.2	5.0	-1.5	-2.9	-2.0	-1.4
포르투갈	-1.4	1.0	1.6	1.7	0.4	-0.2	0.1	1.1	16.4	14.2	13.4	12.6	-4.9	-4.6	-3.2	-2.8
슬로베니아	-1.0	2.6	1.8	2.3	1.9	0.4	-0.3	0.9	10.1	9.8	9.5	8.9	-14.6	-5.4	-2.9	-2.8
슬로바키아	1.4	2.4	2.5	3.2	1.5	-0.1	0.4	1.3	14.2	13.4	12.8	12.1	-2.6	-3.0	-2.8	-2.6
핀란드	-1.2	0.0	0.8	1.4	2.2	1.2	0.5	1.3	8.2	8.7	9.0	8.8	-2.4	-2.7	-2.5	-2.2
Euro area	-0.5	0.8	1.3	1.9	1.4	0.4	-0.1	1.3	12.0	11.6	11.2	10.6	-2.9	-2.6	-2.2	-1.9
불가리아	1.1	1.4	0.8	1.0	0.4	-1.6	-0.5	1.0	13.0	11.7	10.9	10.4	-1.2	-3.4	-3.0	-2.9
체코	-0.7	2.3	2.5	2.6	1.4	0.4	0.8	1.4	7.0	6.1	6.0	5.9	-1.3	-1.3	-2.0	-1.5
덴마크	-0.5	0.8	1.7	2.1	0.5	0.3	0.4	1.6	7.0	6.6	6.5	6.4	-1.1	1.8	-2.8	-2.7
크로아티아	-0.9	-0.5	0.2	1.0	2.3	0.2	-0.3	1.0	17.3	17.0	16.8	16.4	-5.2	-5.0	-5.5	-5.6
헝가리	1.5	3.3	2.4	1.9	1.7	0.0	0.8	2.8	10.2	7.7	7.4	6.6	-2.4	-2.6	-2.7	-2.5
폴란드	1.7	3.3	3.2	3.4	0.8	0.1	-0.2	1.4	10.3	9.1	8.8	8.3	-4.0	-3.6	-2.9	-2.7
루마니아	3.4	3.0	2.7	2.9	3.2	1.4	1.2	2.5	7.1	7.0	6.9	6.8	-2.2	-1.8	-1.5	-1.5
스웨덴	1.3	1.8	2.3	2.6	0.4	0.2	0.5	1.0	8.0	7.8	7.7	7.5	-1.4	-2.2	-1.6	-1.0
영국	1.7	2.6	2.6	2.4	2.6	1.5	1.0	1.6	7.6	6.3	5.6	5.4	-5.8	-5.4	-4.6	-3.6
EU	0.0	1.3	1.7	2.1	1.5	0.6	0.2	1.4	10.8	10.2	9.8	9.3	-3.2	-3.0	-2.6	-2.2

주: 1) 일반정부 재정수지(Net lending(+), net borrowing(-)), (GDP 대비 %)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5*, 2015.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IMF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Update 발표 (2015.1.19.)¹⁴⁾
 - (요약) 유가 하락이 경제 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세계적인 투자 감소 추세와 성장 둔화 우려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상쇄하지는 못할 전망
 - (경제전망) 2015년 201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5%, 3.7%로 10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
 - (미국)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망치를 상향 조정. 저유가 및 긴축재정의 완화로 인해, 2015년도 3.6%, 2016년도에는 3.3%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유로) 중립적 재정정책 기초, 유로화 약세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저조한 경기회복과 수출 하락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지난 전망 대비 하향 조정
 - (일본) 소비세 인상과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 등의 영향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10월 전망 대비 0.2%p 하락한 0.6%로 전망
 - (신흥개도국) 중국의 투자 부진, 러시아의 성장 둔화, 대외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성장률이 10월 대비 하향 조정되어 2015년 4.3%, 2016년 4.7% 예상
 - (위험요인) 국제유가 전망의 불확실성 확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개도국의 자금 유출 가능성, 유로지역의 디플레이션 우려 고조 등

- (정책적 제언) 실질 · 잠재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시급한 시점
 - (선진국)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위험과 이에 따른 실질이지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
 - (신흥개도국) 거시경제 정책이 경기를 부양할 여지는 제한적. 하지만 저유가가 인플레이션 압력 및 대외 취약성을 완화시켜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연기하도록 할 가능성
- 우크라이나, IMF에 장기 구제기금 지원 요청(2015.1.21.)¹⁵⁾
 -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총재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확대신용공여(EFF; Extended Fund Facility)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발표
 - 확대신용공여(EFF)는 기존 지원형태인 대기성차관(SBA; stand-by arrangement)¹⁶⁾과 금리는 비슷하지만 만기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 요청이 승인될 경우 기존 프로그램은 EFF로 대체되며, EFF의 대출 기간이 긴만큼 최종 지원 규모가 늘어날 전망
 -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총재는 EFF가 승인될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적인 거시경제 안정화정책뿐 아니라 광범위하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
 - 당초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3차분 자금 지원 협상은 새로운 지원 요청으로 인해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14) 자료: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update/01/>

15) 자료: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11.htm>

16) IMF는 2014년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해 17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2016년까지 자금을 분할 지원하기로 협의했으며, 현재까지 46억달러를 지급



〈표 5〉 세계경제전망

(단위: %, %p)

			전망치		10월 전망 대비 차이	
	2013	2014	2015	2016	2015	2016
World Output ¹⁾	3.3	3.3	3.5	3.7	-0.3	-0.3
Advanced Economies	1.3	1.8	2.4	2.4	0.1	0
United States	2.2	2.4	3.6	3.3	0.5	0.3
Euro Area	-0.5	0.8	1.2	1.4	-0.2	-0.3
Germany	0.2	1.5	1.3	1.5	-0.2	-0.3
France	0.3	0.4	0.9	1.3	-0.1	-0.2
Italy	-1.9	-0.4	0.4	0.8	-0.5	-0.5
Spain	-1.2	1.4	2	1.8	0.3	0
Japan	1.6	0.1	0.6	0.8	-0.2	-0.1
United Kingdom	1.7	2.6	2.7	2.4	0	-0.1
Canada	2	2.4	2.3	2.1	-0.1	-0.3
Other Advanced Economies	2.2	2.8	3	3.2	-0.2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¹⁾	4.7	4.4	4.3	4.7	-0.6	-0.5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2.2	0.9	-1.4	0.8	-2.9	-1.7
Russia	1.3	0.6	-3.0	-1.0	-3.5	-2.5
Excluding Russia	4.3	1.5	2.4	4.4	-1.6	-0.2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6.6	6.5	6.4	6.2	-0.2	-0.3
China	7.8	7.4	6.8	6.3	-0.3	-0.5
India ²⁾	5	5.8	6.3	6.5	-0.1	0
ASEAN-5 ³⁾	5.2	4.5	5.2	5.3	-0.2	-0.1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2.8	2.7	2.9	3.1	0.1	-0.2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8	1.2	1.3	2.3	-0.9	-0.5
Brazil	2.5	0.1	0.3	1.5	-1.1	-0.7
Mexico	1.4	2.1	3.2	3.5	-0.3	-0.3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2.2	2.8	3.3	3.9	-0.6	-0.5
Sub-Saharan Africa	5.2	4.8	4.9	5.2	-0.9	-0.8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6.1	5.9	5.9	6.1	-0.6	-0.5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2.5	2.6	3	3.2	-0.2	-0.2
World Trade Volume(goods and services)	3.4	3.1	3.8	5.3	-1.1	-0.2
Imports						
Advanced Economies	2	3	3.7	4.8	-0.6	-0.2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5.5	3.6	3.2	6.1	-2.9	-0.2

〈표 5〉의 계속

(단위: %, %p)

			전망치		10월 전망 대비 차이	
	2013	2014	2015	2016	2015	2016
Commodity Prices(U.S. dollars)						
Oil ⁴⁾	-0.9	-7.5	-41.1	12.6	-37.8	14.6
Nonfuel	-1.2	-4.0	-9.3	-0.7	-5.2	0.1
Consumer Prices						
Advanced Economies	1.4	1.4	1	1.5	-0.8	-0.4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¹⁾	5.9	5.4	5.7	5.4	0.1	0.2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percent)						
On U.S. Dollar Deposits(6 month)	0.4	0.3	0.7	1.9	0	0.3
On Euro Deposits(3 month)	0.2	0.2	0	0.1	-0.1	-0.1
On Japanese Yen Deposits(6 month)	0.2	0.2	0.1	0.1	0	0

주: 1) 분기별 추정치와 전망치는 세계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비중의 90%를 설명하고 신흥개발도상국의 약 80%를 설명
 2)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 연도 기준이며 생산 증가율은 시장 가격의 GDP 기준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4)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4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96.26달러, 선물 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4년 56.73달러, 2015년은 63.88달러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5, Table 1.

참고: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경제규모에 근거하여 정렬되었으며 집계된 자료는 계절 조정

- IMF,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앞서 『세계 전망과 정책 과제(Global Prospects and Policy Challenges)』 보고서 발표(2015.2.6.)¹⁷⁾
 - (경제전망) 세계경제성장률은 2015년 약 3.5%, 2016년 3.7%로 전망(2015년 1월 WEO update와 동일)
 - (한국)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7%, 3.9%로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WEO) 대비 0.3%p, 0.1%p 하향 조정
 - (위험요인) 지난 10월에 비해 상·하방위험이 균형적

- (상방위험) 저유가로 인해 민간수요 증가가 촉진 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유가 전망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큰 상황
- (하방위험)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유로지역과 일본의 스테그네이션 및 저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 (정책적 제언) 실질·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고 위험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시행 필요
 - (선진국)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특히 유로지역과 일본), 적정

17) 자료: <http://www.imf.org/external/np/g20/020915.htm>
 원문: <http://www.imf.org/external/np/g20/pdf/2015/020915.pdf>



〈표 6〉 실질GDP 성장률

(단위: %, %p)

	전망치			10월 전망 대비 차이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World Output ¹⁾	3.3	3.5	3.7	0.0	-0.3	-0.3
Advanced Economies	1.8	2.4	2.4	0.0	0.1	0.0
Euro Area	0.8	1.2	1.4	0.0	-0.2	-0.3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¹⁾	4.4	4.3	4.7	0.0	-0.6	-0.5
Advanced G-20	1.8	2.5	2.5	0.0	0.1	0.0
Emerging G-20	5.0	4.6	4.8	0.0	-0.6	-0.6
G-20 ²⁾	3.4	3.6	3.7	0.0	-0.3	-0.3
Argentina ³⁾	-0.4	-1.3	0.0	1.3	0.2	0.0
Australia	2.7	2.7	2.9	-0.2	-0.2	-0.2
Brazil	0.1	0.3	1.5	-0.2	-1.1	-0.7
Canada	2.4	2.3	2.1	0.2	-0.1	-0.3
China	7.4	6.8	6.3	0.0	-0.3	-0.5
France	0.4	0.9	1.3	0.0	-0.1	-0.2
Germany	1.5	1.3	1.5	0.1	-0.2	-0.3
India ⁴⁾	5.8	6.3	6.5	0.1	-0.1	0.0
Indonesia	5.1	5.2	5.5	-0.1	-0.3	-0.3
Italy	-0.4	0.4	0.8	-0.3	-0.5	-0.5
Japan	0.1	0.6	0.8	-0.8	-0.2	-0.1
Korea	3.5	3.7	3.9	-0.3	-0.3	-0.1
Mexico	2.1	3.2	3.5	-0.3	-0.3	-0.3
Russia	0.6	-3.0	-1.0	0.3	-3.5	-2.5
Saudi	3.6	2.8	2.7	-1.0	-1.6	-1.7
South Africa	1.4	2.1	2.5	0.0	-0.2	-0.3
Spain	1.4	2.0	1.8	0.1	0.3	0.0
Turkey	3.0	3.4	3.4	0.0	0.4	-0.3
United Kingdom	2.6	2.7	2.4	-0.6	0.0	-0.1
United States	2.4	3.6	3.3	0.3	0.5	0.3
European Union	1.3	1.6	1.8	-0.1	-0.2	-0.2

주: 1) 분기별 추정치와 전망치는 세계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비중의 90%를 설명하고 신흥개발도상국의 약 80%를 설명

2) G-20 성장률은 European Union을 제외하고 산출

3) 아르헨티나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2014년 5월 기준

4)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 연도 기준이며 생산 증가는 시장 가격의 GDP 기준

자료: IMF, *Global Prospects and Policy Challenges*, Table 1.

참고: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uary 2015.

한 속도의 재정건전화 시행과 함께 인프라 투자 등의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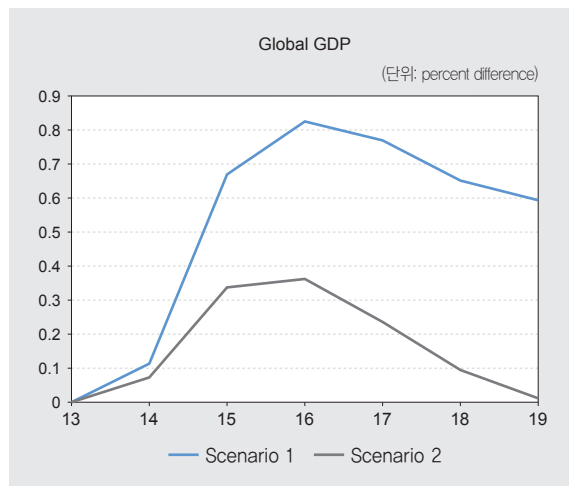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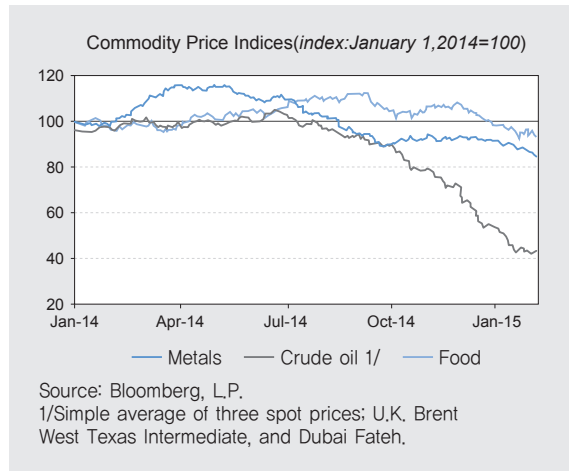
- (신흥국) 성장 촉진정책을 위한 재정여력이 제한적인 상황. 유가하락의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에너지 보조금 및 조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IMF,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앞서 『유가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Oil Price Decline on The Global Economy)』 보고서 발표(2015.2.6.)¹⁸⁾

- 갑작스러운 원유생산 증가라는 공급측 요인이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측 요인과 맞물려 2014년 9월 이후 유가가 약 55% 하락한 상황
- (시나리오 전망) 유가하락 원인의 60%가 공급측 요인. 이와 같은 유가하락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수요부진이 이어질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
 - (시나리오1) 공급측 요인에 의한 저유가가 2019년까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2015년 0.7%p, 2016년 0.8%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2) 수요부진이 지속될 경우 저유가의 세계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2015년 0.3%p, 2016년 0.4%p에 그칠 전망
- (실물) 원유 수·출입 여부에 따라 국가별 영향이 상이
 - (원유수입국) 실질소득 증가, 생산비용 하락 등을 통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 2015년 0.3~0.7%p GDP 성장률 상승효과 예상되지만, 달러강세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

가 클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

[그림 1] 원자재 가격추이 및 경제성장률 시나리오



자료: IMF, Impact of Oil Price Decline on The Global Economy.

18) 자료: <http://www.imf.org/external/np/g20/020915.htm>
원문: <http://www.imf.org/external/np/g20/pdf/2015/020915.pdf>



- (원유수출국)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정부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및 국제수지 불균형 압력이 증가

• (금융) 유가하락으로 인해 원유수출국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러시아 루블화의 경우 현재 2014년 초 대비 50% 평가절하)

- 달러 표시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 및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며, 인플레이션기대를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급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

- 달러화 및 에너지부문에 대한 위험노출액(Exposures)이 큰 금융기관의 긴장감 고조

• (정책) 유가하락에 따른 정책적 제인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수출입국 모두 에너지 보조금 및 조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원유수입국) 선진국들은 실질 금리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 신흥국들은 저유가로 인해 통화정책 여력(monetary space)을 확대

- (원유수출국) 재정여력이 있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자는 허용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점진적 조정을 시행. 장기적으로는 석유생산 이외의 재정수입기반을 확대할 필요

■ IMF, 에볼라 피해국에 1억달러 무상원조 발표(2015. 2.5.)¹⁹⁾

- 재난억제 구호신탁기금(CCRT;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신설
 - 기존의 '재난 후 채무면제 신탁기금(PCDRT; Post

Catastrophe Debt Relief Trust)'을 대체한 기금으로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전염병까지 확대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개국은 2년간 1억달러의 무상원조를 받게 되며 이들 자금은 채무 경감을 위해 사용될 예정

• 한편, IMF 집행이사회는 피해국에 1억 6천만달러를 추가적으로 대출하는 문제를 이달 말 논의할 예정²⁰⁾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 OECD, 2014년 3분기 OECD 국가 GDP 성장률의 기여도 발표(2015.1.14.)²¹⁾

• 민간소비가 2014년 3분기 OECD GDP 성장률의 주요한 기여요인

- OECD 전체 국가의 2014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6%로 전분기 대비 0.2%p 증가

- OECD GDP 성장률 기여도는 민간소비가 0.4%p로 가장 높고, 정부소비와 투자, 순수출이 각각 0.1%p 성장에 기여했으며, 재고비축이 -0.2%p로 일부 상쇄

• 대부분의 G7국가에서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주요한 기여요인이나, 프랑스의 경우 예외적임

- 프랑스는 재고비축(Stockbuilding)이 0.3%p,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각각 0.2%p 성장에 기여, 순수출(-0.2%p)과 투자(-0.1%p)의 마이너스가 일부 상쇄

19) IMF: <http://www.imf.org/external/pubs/ft/survey/so/2015/NEW020515A.htm>

20) 2014년 「재정동향」 10월 1호 참고. IMF는 지난 9월 서아프리카 3개국에 대해 1억 3천만달러(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각각 약 4,100만달러, 4,900만달러, 4,000만 달러 지원)의 대출 지원을 승인한 바 있음

21) 참고: <http://www.oecd.org/std/na/contributions-to-gdp-growth-third-quarter-2014-oecd.htm>

〈표 7〉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¹⁾	순수출	재고 비축 ²⁾	GDP 성장률
OECD 전체 ³⁾	Q2 13	0.0	0.0	0.1	0.1	0.2	0.4
	Q3 14	0.4	0.1	0.1	0.1	-0.2	0.6
캐 나 다	Q2 13	0.6	0.1	0.2	0.6	-0.5	0.9
	Q3 14	0.4	0.0	0.3	0.2	-0.2	0.7
프 랑 스	Q2 13	0.3	0.1	-0.2	-0.2	-0.1	-0.1
	Q3 14	0.2	0.2	-0.1	-0.2	0.3	0.3
독 일	Q2 13	0.1	0.1	-0.4	0.1	0.1	-0.1
	Q3 14	0.4	0.1	-0.2	0.2	-0.5	0.1
이 탈 리 아	Q2 13	0.1	0.0	-0.1	0.1	-0.3	-0.2
	Q3 14	0.1	-0.1	-0.2	0.1	-0.1	-0.1
영 연	Q2 13	-3.1	0.1	-1.0	1.0	1.3	-1.7
	Q3 14	0.2	0.1	-0.2	0.1	-0.6	-0.5
미 국	Q2 13	0.3	0.3	0.3	0.3	-0.4	0.8
	Q3 14	0.6	0.1	0.0	-0.2	0.2	0.7
미 국	Q2 13	0.4	0.0	0.4	-0.1	0.4	1.1
	Q3 14	0.6	0.2	0.3	0.2	0.0	1.2

주: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2) Changes in inventories

3) Contributions may not sum to GDP growth due to rounding

자료: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OECD, 2014년 3분기 고용률(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발표(2015.1.19.)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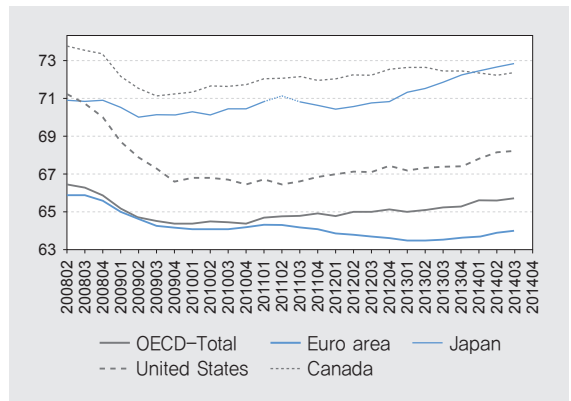
- OECD 전체 회원국의 2014년 3분기 고용률은 65.7%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2008년 2분기(위기 이전) 대비 0.8%p 낮은 수준
- 국가별 고용률은 유로지역, 일본, 영국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
 - 유로지역은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한 64.0%로

지난 4분기 연속 상승세

- 일본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72.8%(10분기 연속 상승), 영국은 0.1%p 상승한 72%(6분기 연속 상승)
- 미국은 68.2%로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 기록
- 캐나다는 72.3%로 지난 2분기 연속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그림 2] OECD 국가의 분기별 고용률(계절조정)

(단위: %)



주: 일본의 2011년 1분기 및 3분기 통계 없음

자료: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22) 참고: <http://www.oecd.org/std/labour-stats/employment-situation-third-quarter-2014-oecd.htm>



〈표 8〉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계절조정)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08	2013			2014		
					Q2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64.5	64.8	65.0	65.2	66.5	65.1	65.2	65.3	65.6	65.6	65.7
주요 7국	67.3	67.5	67.7	68.1	69.6	68.0	68.1	68.2	68.4	68.6	68.7
유럽 연합	64.0	64.2	64.1	64.1	65.8	64.0	64.1	64.3	64.6	64.8	65.1
유로 지역	64.1	64.3	63.8	63.5	65.9	63.5	63.5	63.6	63.7	63.9	64.0
호주	72.4	72.7	72.4	72.0	73.3	72.4	72.4	72.4	72.5	72.7	72.6
캐나다	71.5	72.0	72.2	72.5	73.7	72.6	72.4	72.4	72.3	72.2	72.4
프랑스	63.9	63.9	63.9	64.1	64.8	64.0	64.2	64.2	64.2	64.2	64.1
독일	71.1	72.5	72.8	73.3	69.8	73.5	73.6	73.7	73.6	73.7	74.0
이탈리아	56.9	57.0	56.8	55.6	58.8	55.6	55.4	55.5	55.6	55.6	55.7
일본	70.6	71.1	70.6	71.7	70.9	71.5	71.8	72.2	72.4	72.6	72.8
스페인	58.6	57.7	55.4	54.4	64.9	54.6	55.0	55.1	55.3	55.8	56.0
영국	69.5	69.5	70.1	70.8	71.8	70.3	54.7	71.0	71.5	71.9	72.0
미국	66.7	66.6	67.1	67.4	71.2	67.3	70.6	67.4	67.8	68.1	68.2
한국	63.3	63.8	64.2	64.4	63.9	64.3	67.4	64.9	65.4	65.1	65.4

자료: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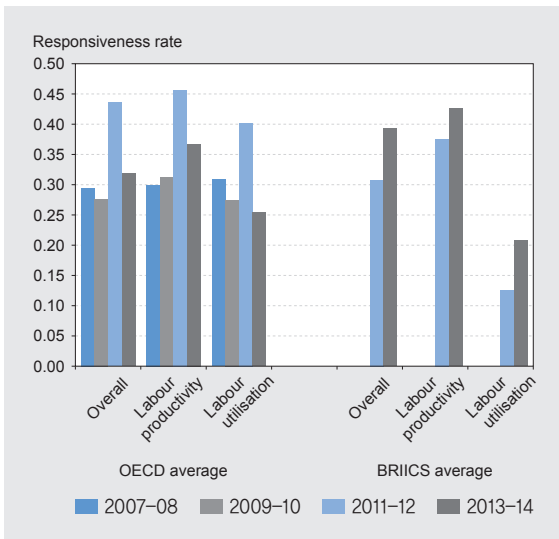
- OECD, 구조개혁에 관한 연례 보고서 『Going for Growth(2015)』 발표(2015.2.9)²³⁾
 - OECD 국가와 주요 비OECD 국가가 직면한 성장과제를 살펴보고, 지난 2년간의 구조적 정치 개혁 추진 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
 - 단기적 측면의 정책과제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 생산성의 저하, 공공부문의 높은 예산적자 및 금융부분 취약성 등
 - 장기적 측면의 정책과제는 인구노령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환경과 괴 등이 포함됨
 - 지난 2년간, 대부분 OECD 선진국의 구조개혁 속도

- 는 감소한 반면 신흥국의 개혁 속도는 가속화됨
 - 금융위기 직후 상당히 가속화되었던 구조개혁 속도의 감소는 부분적으로 유로통화권 부채위기와 관련된 시장압박에 기인함
 - 대부분의 노르딕 국가와 유로통화권 핵심국가에서는 개혁활동이 약세를 유지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구조개혁 활동은 감소 추세이고, 일본은 높아지는 추세
 - BRICS는 성장의 정체 및 제약에 대한 인식과 상품 가격 및 자본흐름의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킬 필요성을 반영하여 개혁 속도를 가속화
 -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약세의 맥락에서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을 염두하여 교육

23) <http://www.oecd.org/eco/growth/goingforgrowth.htm>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그림 3] 구조적 개혁 추진 과제의 이행실적 평가



주: Responsiveness rate는 구조개혁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정성지표로서, 0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자료: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5: Going for Growth*.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호주

1. 기타

- 호주중앙은행(RBA), 기준금리 2.25%로 0.25%p 하향 조정(2015.2.3.)²⁴⁾
 - RBA 이사회는 2013.8월 2.5%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래 18개월 만에 사상 최저인 2.25%로 기준금리 재조정

- 기준금리 인하는 유럽, 일본 등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호주의 추세를 밀도는 경제 성장, 물가 하락, 호주달러 가치 하락 등의 요인에 기인
-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 주택 대출 및 기업 신용대출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²⁵⁾

- 호주중앙은행(RBA), 2015년 경제전망 하향 조정(2015.2.6.)²⁶⁾
 - RBA는 “Statement on Monetary Policy”²⁷⁾에서 2015년 및 향후 전망기간 동안의 호주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변화를 발표
 - (경제) 호주 경제는 당초 기대보다 저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7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이후 전망기간 동안은 낮은 환율과 이자율, 천연액화가스(LNG)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회복해 2016년에는 3.75%까지 호전될 것으로 기대

24) 자료: 호주중앙은행(RBA), <http://www.rba.gov.au/media-releases/2015/mr-15-01.html>
 25) 실제로 호주 4대 시중은행인 커먼웰스은행, 웨스트팩은행, NAB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시중금리 인하안을 발표
 26) 자료: 호주중앙은행(RBA), <http://www.rba.gov.au/publications/smp/2015/feb/html/index.html>
 27) 연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표되며, 세계경제 및 환율 시장,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



〈표 9〉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4	2014/15	2015	2015/16	2016	2016/17
실질GDP 성장률	2.75	2.25	1.75~2.75	2.5~3.5	2.75~3.75	2.75~4.25

자료: RBA,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Feb. 2015," 2015.2.6.

- (인플레이션) 최근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유가 하락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향후 몇 년간 2~3%대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최근 1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은 앞으로 소폭 더 상승해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캐나다

1. 기타

- 통계청, 2014년 3분기 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발표(2015.1.7.)²⁸⁾
- 캐나다 통계청은 통합재정 기준의 분기별 재정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 FY2014 3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4억캐나다달러 증가한 약 1,871억캐나다달러
 - FY2014 3분기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6억캐나다달러 증가한 약 1,902억캐나다달러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표 10〉 캐나다 2014년 3분기 재정통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3			2014		
	Q2	Q3	Q4	Q1	Q2	Q3
수익(Revenue)	178,945	180,729	182,607	184,103	185,769	187,096
비용(Expense)	184,988	186,595	190,883	200,477	189,515	190,193
총운영수지(Gross operating balance)	9,784	10,114	7,843	-123	12,643	13,439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6,043	-5,866	-8,276	-16,374	-3,746	-3,097
비금융자산 순취득(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1,652	4,504	3,046	145	-3,940	4,099
순융자/순차입(Net lending or borrowing)	-7,695	-10,370	-11,322	-16,519	194	-7,196
금융자산 순취득(Net acquisition of financial assets)	21,419	10,722	-18,227	-12,024	26,600	2,816
부채의 순부담(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29,371	21,352	-6,013	4,757	26,599	9,263
지출(Total expenditure)	186,640	191,099	193,929	200,622	185,575	194,292
순자산(Net worth)	-226,468	-186,304	-188,973	-200,015	-205,470	-202,772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797,085	810,829	814,743	821,378	822,717	832,475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1,001,963	1,010,080	997,213	1,006,848	1,033,294	1,049,506
부채(Liabilities)	2,025,516	2,007,213	2,000,929	2,028,241	2,061,481	2,084,753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1,023,553	-997,133	-1,003,716	-1,021,393	-1,028,187	-1,035,247

자료: 캐나다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Table 385-0032.

28) 통계청,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50107/dq150107e-eng.htm>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FY2014 예산집행결과 발표(2015.2.6.)²⁹⁾
 - (재정수지) 2014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749억유로) 107억유로 증가한 856억유로로 소폭 악화
 - (지출) 재정지출은 2013년(3,767억유로)보다 10억유로 증가한 3,777억유로
 - ☞ 재정지출의 증가는 미래투자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³⁰⁾을 포

함한 투자지출(11.5%)과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지출 증가(204%)에 기인
 - (수입) 재정수입은 2013년(3,012억유로)보다 93억유로 감소한 2,919억유로
 ☞ 재정수입의 감소는 주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에 따른 법인세의 전년 대비 25.1% 감소에 기인

〈표 11〉 FY2014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2013	2014	증감률
재정지출	376,669	377,657	0.3
정부지원 (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989	990	0.1
인건비	119,597	120,765	1.0
운영비	56,004	52,763	-5.8
채무비용	44,886	43,159	-3.8
투자지출	9,975	11,123	11.5
정부개입지출	65,709	69,560	5.9
금융활동 (opérations financières)	1,488	4,523	204.0
지방정부 이전금 및 유럽연합 분담금	78,021	74,774	-4.2
재정수입	301,240	291,971	-3.1
조세수입	284,005	274,332	-3.4
세외수입	13,713	13,949	1.7
협력기금 (Fonds de concours)	3,522	3,690	4.8
일반회계 재정수지	-75,429	-85,686	13.6
특별회계 재정수지	561	130	-76.8
총재정수지	-74,868	-85,556	14.3

자료: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14, 20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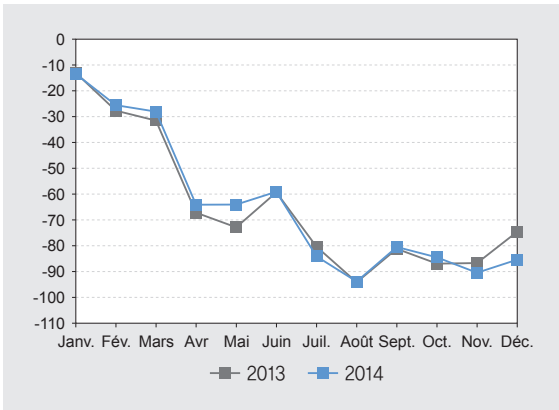
29) 프랑스 예산안,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iles/documents/ressources_documentaires/SMB/2014/situation_mensuelle_budget_etat_31122014.pdf

30) 미래투자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4년 주요국 예산안』 참고



[그림 4] 2014 재정수지 집행결과

(단위: 십억유로)



자료: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14, 2015.2.6.

2. 기타

- 기업가정신 및 혁신 문화(Culture de l'innovation et de l'entrepreneuriat) 프로젝트 착수(2014.12.31.)³¹⁾
 - 기업가정신 및 혁신 문화 프로젝트는 미래를 위한 투자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의 일환으로 청년층에게 혁신 및 기업가정신 문화를 고취시키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가정신을 교육할 예정
 -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으로 컴퓨터 코딩법 교육, 중고등학생에게 전문직 탐구 및 직업정보 제공, 대학생의 창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개의 프로젝트로 구성
 - 정부는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며, 총 지원규모는 2,000만 유로

- 도시재생 프로젝트³²⁾의 업데이트된 시행 계획 발표(2015.2.11.)³³⁾
 - 정부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2014~2024년 동안 가장 낙후된 200지역³⁴⁾에 대해 50억유로를 투자
 - 프로젝트의 목표는 경제활동 및 고용 회복, 사회 통합, 도시재건과 생활환경 개선의 3가지
 - 정부의 50억유로 투자를 통해 2014~2024년간 200억유로의 효과를 나타내며,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독일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FY2014 잠정결산 발표(2015.1.13.)³⁵⁾
 - (재정지출) 목표 대비 10억유로 낮은 2,955억유로 기록, 이는 2009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로 낮은 이자지급 등에 기인
 - (재정수입)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2,955억유로 기록, 이는 목표 대비 55억유로 높은 수치로 법인세 수입 증가추세 등에 기인
 - (신규차입)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동일 수준을 나타내면서 0을 기록

31)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lancement-de-l-appel-a-projets-culture-de-l-innovation-et-de-l-entrepreneuriat>

32) 내각은 2013.8.2에 도시통합 및 주택 계획 법안(loi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cohésion urbaine)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도시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 2014.2.21에 동 법안(loi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cohésion urbaine)이 채택되었고, 2014.6.17에 1,300지역에 대한 도시정책 착수

33)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action/la-nouvelle-geographie-prioritaire>

34) 도시재생의 주요 추진 기관인 국가도시재생청(ANRU: Agence Nationale pour la Renovation Urbaine)이 2014.12.16에 200지역을 선정하였고, 2015.1.10에 새로운 도시정책을 개시

35)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5/01/2015-01-13-PM01.html>

〈표 12〉 FY2014 결산(잠정)

(단위: 십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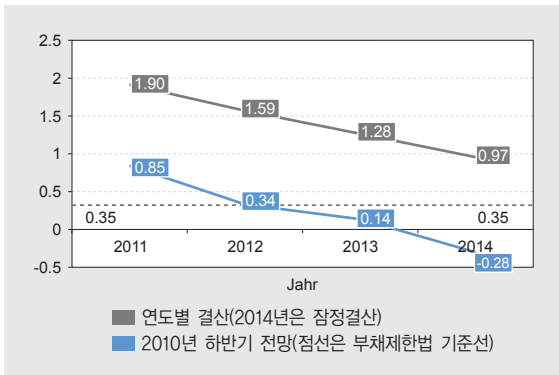
	2014(목표)	2014(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296.5	295.5	-1.0
재정수입	290.0	295.5	5.5
조세수입	268.2	270.8	2.6
세외수입	21.8	24.7	2.9
신규차입	6.5	0	-6.5

자료: 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des Bundes für das Jahr 2014*.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28% 흑자를 기록, 이는 2010년 하반기 전망 대비 1.25%p, 부채제한법* 대비 0.63%p 각각 높은 수치
 - * Schuldenbremse(Debt Brake)³⁶: 연방의 신규 순채무 증가를 2016년부터 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신규 순채무 증가는 2020년부터 전적으로 금지
- 최종 결산보고서는 6월 발표 예정

[그림 5]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des Bundes für das Jahr 2014*.

■ 재무부, 자국 및 EU 재정준칙에 대한 이행상황 발표 (2015.1.22.)³⁷

- (National Fiscal Rules) 2014년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가 GDP 대비 0.28%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부채제한법 기준을 초과 달성
- (EU Fiscal Rules) 신재정협약과 안정성장협약상의 재정준칙을 모두 이행
 - 2014년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9% 흑자, 재정수지는 0.4%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지준칙을 모두 준수
 - 2014년 국가부채가 기준치를 초과한 GDP 대비 74%를 기록하였으나 과다적자시정조치에 따른 기준치가 76%로 산정³⁸되어 부채준칙도 준수*
 - * 안정성장협약에서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6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과거 3년 기준 연평균 20분의 1 이상 줄이면 부채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1/20 rules)

〈표 13〉 재정준칙과 이행상황

(단위: GDP 대비 %)

구분	지표	내용	2013	2014 (잠정)
National Fiscal Rules				
부채제한법 (Debt Brake)	구조적 재정수지 (연방정부)	적자 0.35% 이하 ('16년부터)	-0.14	0.28
EU Fiscal Rules				
신재정협약 (Fiscal Compact)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0.5% 이하	0.8	0.9
안정성장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재정수지	적자 3% 초과금지	0.1	0.4
	국가부채	60% 초과 금지	76.9	74

자료: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 2014.10.13, 2014.10.31, 2015.1.22*.

36) 참고: 『정책분석 11-06 독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p. 103~106

37)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Entwicklung_Oeffentliche_Finanzen/entwicklung-oeffentliche-finanzen.html

38) 산정식은 『정책분석 12-03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 74 참고



2. 기타

- 경제에너지부,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5)³⁹⁾ 발표(2015.1.28.)⁴⁰⁾
 - (배경) 연방정부는 1967년 제정된 '경제안정 및 성장 촉진법'⁴¹⁾에 따라 동 보고서를 매년 하원과 상원에 제출
 - (경제전망) 2015년 경제성장률은 2014년과 같은 1.5%, 실업률은 고용자 수의 증가로 2014년보다 0.1%p 낮은 6.6% 전망
 - 연방은행은 2014년 12월 월간보고서에 2015년 경제성장률을 1.0%, 실업률을 6.7%로 전망한 바 있음
 - (정책방향) 독일과 유럽의 미래에 대한 투자(Investition)와 혁신(Innovation)을 강화
 - 교육, 연구,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출을 강화하고, 경제부문에서는 산업, 중산층, 디지털 혁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표 14〉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전망)
실질GDP 성장률	0.1	1.5	1.5
실업률	6.9	6.7	6.6

자료: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15, 2015.1.28, p. 7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이탈리아

1. 기타

- 이탈리아 통계청, 2014년 3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발표(2014.1.9.)⁴²⁾
 - 2014년 3분기 GDP 대비 순차입은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한 3.5%이고,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0.5%p 감소한 0.8% 수준
 -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GDP 대비 48.0%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경상지출이 0.2%, 자본지출이 8.0% 증가
 -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GDP 대비 44.5% 수준
- 이탈리아 중앙은행, Bollettino Economico를 통해 경제전망치 발표(2015.1.16.)⁴³⁾
 - 2014년 GDP가 0.4% 하락한 이후, 2015년에 0.4%, 2016년에 1.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확장적 통화정책기조와 안정화법의 감세정책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 무역의 증가, 유로화 가치하락, 유가 하락 등도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
 - 투자 부진, 경기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의 지속 등의 요인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가 하락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

39)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J-L/jahreswirtschaftsbericht-2015,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40) <http://www.bmwi.de/DE/Presse/pressemitteilungen,did=687306.html>

41) StWG: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42) 이탈리아 통계청, <http://www.istat.it/it/archivio/144681>

43) 이탈리아 중앙은행, Bollettino Economico n. 1, gennaio 2015

-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인구 증가로 인해 효과가 상쇄되어 실업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표 15〉 이탈리아 거시경제 시나리오

(단위: percentage changes on previous year, unless otherwise indicated)

	2014	2015	2016
GDP ¹⁾	-0.4	0.4	1.2
Household consumption	0.3	0.9	0.9
Government consumption	-0.2	-0.5	-0.6
Gross fixed investment	-2.6	-0.7	2.5
Total exports	1.7	3.7	5.9
Total imports	0.3	3.4	5.7
Change in stocks ²⁾	-0.5	-0.1	0.0
HICP	0.2	-0.2	0.7
Employment ³⁾	0.0	0.5	0.3
Unemployment rate ⁴⁾	12.8	12.8	12.8
Export competitiveness ⁵⁾	0.1	3.6	0.4
Current account balance ⁶⁾	1.8	2.5	2.5

주: 1) For GDP and its components: chain-linked volumes; changes estimated on the basis of quarterly data adjusted for seasonal and calendar effects

2) Includes valuables, Contribution to GDP growth; percentage points

3) Fulltime equivalent workers

4) Annual averages, percent

5) Calculated by comparing the price of foreign manufactures with the deflator of Italian merchandise exports (excluding energy and agricultural products); a positive value indicates a gain in competitiveness

6) As a percentage of GDP

자료: 이탈리아 중앙은행, *Bollettino Economico n. 1*, gennaio 2015.

〈표 16〉 기타 기관의 이탈리아 경제전망

(단위: percentage changes on previous year, unless otherwise indicated)

	GDP ¹⁾		Inflation ²⁾	
	2015	2016	2015	2016
IMF(10월)	0.8	1.3	0.5	1.1
OECD(11월)	0.2	1.0	0.0	0.6
European Commission(11월)	0.6	1.1	0.5	2.0
Consensus Economics(12월)	0.4	...	0.4	...

주: 1) The growth rate forecasts of the OECD are adjusted for calendar effects; thos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IMF are not

2) HICP

자료: 이탈리아 중앙은행, *Bollettino Economico n. 1*, gennaio 2015.

〈표 17〉 2014년 3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단위: 백만유로, %)

	2013년 3분기	2014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지출			
경상지출	176,002	176,384	0.2
자본지출	14,430	15,578	8.0
총지출	190,432	191,962	0.8
수익			
경상수입	176,483	177,000	0.3
자본수입	875	1,134	29.6
총수입	177,358	178,134	0.4
경상수지	481	616	
순차입	13,074	13,828	
기초재정수지	5,250	3,058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Conto economico trimestrale delle amministrazioni pubbliche.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 **일본**

1. 예산·결산 등

- 재무성, '지방의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⁴⁴⁾을 위해 약 3.5조엔 규모의 FY2014 추가경정예산을 발표(2015.1.9.)
 -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일본의 엔저 효과로 인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 후 가계의 소비 위축 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 목적
 - 지방경제활성화 약 6천억엔,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 약 1조 2천억엔, 재해복구와 부흥에 약 1조 7천억엔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

- FY2015 정부예산안 발표(2015.1.14.)
 -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FY2015에 96조 3,420억엔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
 - (주요내용) FY2015 정부 예산안은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음의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편성⁴⁵⁾
 - 인구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사람, 일자리 만들기 전략' 추진
 - ▣ 청년층 일자리 30만개 창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조치 실시 등
 - 육아 지원 정책(0.3조엔 → 0.5조엔), 의료 개호 분야(0.2조엔 → 0.8조엔)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개호

〈표 18〉 FY2014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세출		세입	
1. 생활자(가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관련 경비	11,854	1. 세수	17,250
2. 지방경제활성화 관련 경비	5,783	2. 세외수입	1,036
3. 재해위기 대응 경비	7,578	3. 전년도잉여금수입	10,622
4. 지방교부세교부금	9,538		
5. 기타 경비	4,463		
6. 기본경비 감액	△17,880		
(1) 국채비	△15,142	4. 채권금	△7,571
(2) 기타	△ 2,738	5. 전년도잉여금수입(부흥재원)	9,731
7.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회계로의 전입	9,844	6. 세외수입(부흥재원)	113
합 계	31,180	합 계	31,180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채권금의 경우 건설국채를 증액시키고 적자 국채를 감액
 3. 경제대책의 국비: 35,289억엔(일반회계의 세출 1~3, 7. 특별회계(재정투융자특별회계 투자계정) 세출 230억엔의 합계)
 4.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회계로의 전입 중 7,247억엔(재정법 제6조 순잉여금의 2분의 1에 상당)에 대해서는 부흥채권의 상환재원으로 충당
 자료: 재무성, 「平成26年度補正予算フレーム」, 2015.1.9.

44) 지난 2014년 12월 27일 내각회의에서 약 3.5조엔 규모의 국비 편성에 의결함
 45) 재무성, 「平成27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5.1.14.

서비스 요금(개호보수)을 인하, 개호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여 부담을 경감

- 사전 방재 대책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후쿠시마의 재생을 가속화
- 외교 및 안보 재건의 관점에서 외교 예산과 방위비 정비
- (세입) FY2015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96조 3,420억엔으로 편성
 - (조세 및 인지수입) 전년 대비 9.0% 증가한 54조 5,250억엔
 - (기타수입) 전년 대비 7.0% 증가한 4조 9,540억엔
 - (공채금) 전년 대비 10.6% 감소한 36조 8,630억엔
- (세출) FY2015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96조 3,420억엔으로 편성
 - (국채비) 전년 대비 0.8% 증가한 23조 4,507억엔
 -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경비) 전년 대비 0.4% 증가한 72조 8,912억엔
 -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15조 5,357억엔으로 이는 세수입 증가를 반영한 것에 기인

〈표 19〉 FY2015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분	FY2014 (당초)	FY2015 예산	증감액	증감률
[세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00,010	545,250	45,240	9.0
2. 기타 수입	46,313	49,540	3,226	7.0
3. 공채금	412,500	368,630	△43,870	△10.6
(1) 공채금	60,020	60,030	10	0.0
(2) 특례공채금	352,480	308,600	△43,880	△12.4
합계	958,823	963,420	4,596	0.5
[세출]				
1. 국채비	232,702	234,507	1,805	0.8
2.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726,121	728,912	2,791	0.4
합계	958,823	963,420	4,596	0.5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27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2015.1.14.

- FY2014 추가경정예산 국회 제출(2015.1.26)
 -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으로 약 3.5조엔 규모의 FY2014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재정동향」 1월 제2호 참조

2. 기타

- 내각부, 「2015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 각의 승인(2015.1.12.)
 - (경제동향) 완만한 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 악화 등으로 2014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전년 대비 △0.5%, 명목성장률은 전년 대비 1.7%로 추정
 - (경제전망) 2015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전년 대비 1.5%, 명목성장률은 전년 대비 2.7%로 전망
 - 이는 유가하락, 소비세율 추가 인상 연기(2017. 4),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 엔화 약세 기조



〈표 20〉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2013 실적 (명목)	2014추정 (명목)	2015전망 (명목)	전년 대비 증가율					
				2013		2014		2015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83.1	491.4	504.9	1.8	2.1	1.7	△0.5	2.7	1.5
완전실업률	3.9	3.6	3.5	/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0.9	3.2	1.4						
GDP 디플레이터 변화율	△0.3	2.2	1.2						
GDP 대비 경상수지(명목, %)	0.2	1.0	2.0						

자료: 내각부, 『平成27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5.1.12.

심화에 따른 기업 수익 개선 등에 기인

- (경제 재정운영의 기본자세) 지속적으로 '세 개의 화살(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설비투자 증가, 고용 환경 개선 등 경기부양을 위해 긴급경제대책을 실시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 2015년 총국채발행 규모는 2,394억유로이며 2014년 2,413억유로보다 감소
 - 이 중 단기물이 973억유로, 중·장기물이 1,420억유로를 차지
- 2014년 평균 발행 금리는 2.45%에서 1.52%로 하락했으며 평균 상환기간은 6.28년으로 집계

- 통계청, 2014년 4/4분기 실업률 발표(2015.1.22.)⁴⁷⁾
 - 2014년 4/4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3%p 감소한 23.70%로 집계
 - 총 실업자 수는 5,457,700명으로 2014년 1년간 477,900명 감소
 -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 건설, 산업에서 각각 172,800명, 69,700명, 36,400명 감소했으나 농업에서 24,200명 증가
 - 총 취업자 수는 작년 한해 433,900명 증가하여 17,569,100명으로 집계

스페인

1. 기타

- 경제부, 순규모 550억유로의 2015년 국채 발행 계획 발표(2015.1.13.)⁴⁶⁾
 - 경제부는 재원조달비용 감소, 만기 연장, 투자자 다변화를 목표로 2015년 순규모 550억유로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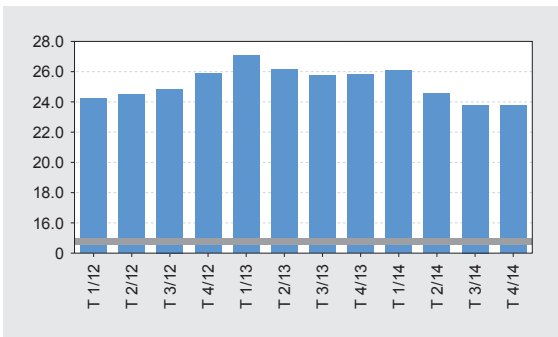
46) 자료: 경제부, <http://www.mineco.gob.es/portal/site/mineco/menuitem.ac30f9268750bd56a0b0240e026041a0/?vgnnextoid=ffb659f89eda410vgnVCM1000001d04140aRCRD&vgnnextchannel=864e154527515310vgnVCM1000001d04140aRCRD>

47) 자료: 통계청, <http://www.ine.es/daco/daco42/daco421/epa0414.pdf>
 경제부, http://www.mineco.gob.es/stfls/mineco/prensa/ficheros/noticias/2014/150122_np_epa4t.pdf

- 2014년 중 민간부문에서 415,700명, 공공부문에서 18,100명 증가
- 부문별로는 서비스에서 334,200명, 산업에서 98,000명, 건설에서 40,000명이 증가했으나 농업에서 48,400명 감소

[그림 6] 3년간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Encuesta de Población Activa, 2014Q4.

<표 21> 2015년 국제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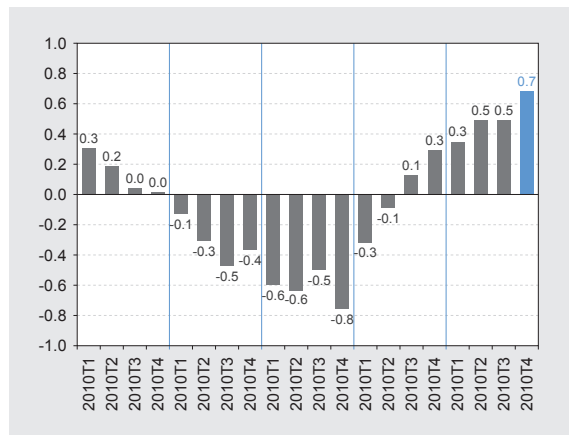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4년 최종	2015년 계획
순발행	55,641	55,000
단기채	-10,413	5,000
중장기채	66,054	50,000
총발행	241,333	239,369
단기채	99,103	97,393
중장기채	142,230	141,996
총상환	185,692	184,369
단기채	109,516	91,996
중장기채	76,176	92,373

자료: 스페인 경제부, Estrategia de Financiación del Tesoro Público, 2015.

- 통계청, 2014년 4/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5.1.30.)⁴⁸⁾
 - 2014년 4/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속보)은 3/4분기보다 0.2%p 상승한 0.7%⁴⁹⁾로 추계
 - 2013년 3분기 이래 6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
 - 201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4%로 집계
 - 4년 만에 (+)로 반등한 수치이며 2007년의 3.8% 이후 7년 만에 최고치

[그림 7]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스페인 통계청, Estimación avance del PIB trimestral 2014Q4, 2015.1.30

48) 자료: 통계청, <http://www.ine.es/prensa/cntr0414a.pdf>

49) 분기율, 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2010년 기준, 연쇄가중실질금액추계(chain-linked volume measures)



- 재무부, 탈세방지법 관련 징세 실적 발표(2015.2.9.)⁵⁰⁾
 - 재무부는 탈세방지법(anti-fraud law)⁵¹⁾ 활동에 따라 국세청이 2014년 123,2억유로의 세수를 징수하였다고 발표
 - 이는 2013년 109,5억유로보다 12,5%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고 실적
 - 지난 3년간 징수한 총세수는 347,85억유로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영국

1. 예산·결산 등

- 영국 통계청, 2014년 12월 공공부문 재정 현황 발표 (2015.1.22.)⁵²⁾
 - 2014년 4월~12월 순차입은⁵³⁾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863억파운드로 집계되었고, 회계연도 말까지 순차입은 913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예산책임청(OBR) 전망)
 - 경상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702억파운드이고, 회계연도 말에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636억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순투자는 161억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9.5%가 증가하였고, 회계연도 말(2015년 3월)에는 전년 대비 7.4% 증가하여 277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4년 12월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80.9%이고, 회계연도 말에는 8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22〉 공공부문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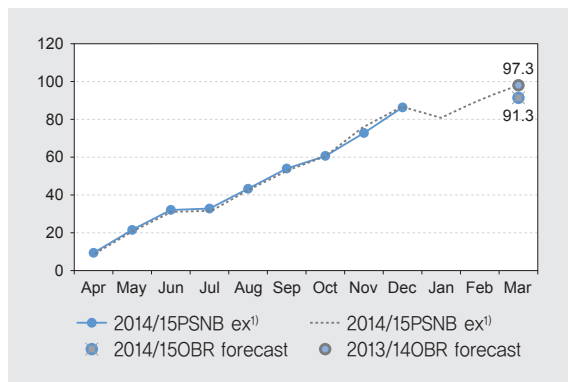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4월~12월			회계연도(4월~3월)		
	2014/15	2013/14	변화 (%)	2014/15 OBR 전망	2013/14	변화 (%)
경상재정수지	70.2	71.7	-2.1	63.6	71.5	-11.0
순투자	16.1	14.7	9.5	27.7	25.8	7.4
순차입	86.3	86.5	-0.0	91.3	97.3	-6.2
순채무	1,483.3	1,388.7	6.8	1,489.0	1,402.1	6.2
GDP 대비 순채무(%)	80.9	79.3	2.0	80.4	79.1	1.6

자료: 영국 통계청, Public Sector Finances December 2014, Table 2.

[그림 8] 공공부문 누적 순차입

(단위: 십억파운드)



주: 1) 공공부문 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차입을 의미

자료: 영국 통계청, Public Sector Finances December 2014, Figure 1.

50) 자료: 재무부, <http://www.minhap.gov.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Notas%20Prensa/2015/MINISTRO/09-02-15%20Nota%20ministro%20Sevilla%20datos%20fraude%20fiscal.pdf>

51) 특정거래에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등 탈세방지를 위한 법률로 2012년 10월 발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12년 하반기』, 2012.12.를 참고.

52) 영국 통계청, <http://www.ons.gov.uk/ons/rel/psa/public-sector-finances/december-2014/stb-dec-2014.html>

53) 순차입은 경상수지와 순투자의 합으로 구성

2. 기타

- 경제재무부, 잉글랜드 북서부지역에 대한 장기 경제 계획 발표(2015.1.8.)⁵⁴⁾
 - 잉글랜드 남부에 비해 경제성도가 낮은 북서부지역의 경제성장 지원으로 균형발전 도모
 - 장기 경제계획의 기간은 2015년~2030년이고, 6개의 중점분야로 구성⁵⁵⁾
 - (경제성장률 개선) 도시들 간의 협력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
 - (고용률 제고) 기업투자 및 창업기업 지원
 - (교통기반시설) 기존 철도 및 도로 증설과 신규건설
 - (과학혁신) 재료공학, 바이오 의약품, Supercomputing, 에너지 중점의 과학 중심지 육성
 - (삶의 질 향상)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강점을 살리고, 신규 주택건설 및 교육지원
 - (권한 및 발언권 강화) 직선제 시장 선출, 지역경제 · 정부에 지역주민의 통제권 부여
 - 장기 경제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북서부지역의 경제규모는 2030년까지 180억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기대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미국

1. 예산 · 결산 등

- 113대 의회 2회기*에 제정된 PAYGO 법률은 향후 5년간 총 31억달러의 적자를 감축할 전망(2015.1.23.)⁵⁶⁾
 - * 2010년 PAYGO 법은 의회의 회기(session)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예산처(OMB)가 예산점검표를 합산하여 보고서를 발령하고 일률삭감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113대 의회 2회기에 제정된 PAYGO 법률은 총 54개로 5년 예산점검표상 매년 평균 6억 2,600만달러의 흑자 예상
 - 동 법률들의 10년 예산점검에 의하면 매년 평균 15억 2,100만달러의 흑자 발생
- 이전 회기까지의 예산점검표 결과를 합산한 일률삭감 필요액은 0으로 산출
- 의회예산처(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결과, 재정적자 비중이 FY2018부터 점차 증가하여 FY2025에 GDP의 4%(약 1,1조달러)까지 확대 (2015.1.26.)⁵⁷⁾
 - (재정전망) 재정적자 규모는 FY2018까지 50년 평균치(GDP의 2.7%)에 근접, FY2019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25에 GDP의 4.0% 규모로 확대될 전망
 - 세입은 개인소득세 및 과세이연 퇴직연금 배당 증가, 세금감면 일몰 적용 등으로 FY2016 GDP의 18.4%까지 증가한 후 FY2017~FY2025까지

54)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long-term-economic-plan-for-the-north-west-set-out-by-prime-minister-and-chancellor>

55) 장기 경제계획의 구체적인 예로 맨체스터 공항의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 Daresbury 지역의 이노베이션 허브 등의 확장, 런던과 북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인 High speed 2의 건설, 우수 대학들과 NHS교육병원 지원 등

56) OMB, 2014 Statutory PAY-AS-YOU-GO Act Annual Report, 2015.1, <http://www.whitehouse.gov/omb/legislative-affairs>

57) CBO,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5 to 2025, 2015.1, <http://www.cbo.gov/publication/49892>



〈표 23〉 2014 PAYGO 예산점검표(Scorecards)

(단위: 백만달러)

PART 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4~19	2014~24
Total 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 for the second session of the 113th Congress													
Net impact on the on-budget deficit	4,035	-409	7,131	4,768	-1,282	-3,333	-2,425	-2,334	-1,997	-1,910	-1,880	10,909	365
Less:													
Emergency requirements	0	3,219	5,509	4,318	711	281	288	295	312	318	331	14,038	15,560
Net PAYGO impact	4,035	-3,628	1,622	450	-1,993	-3,614	-2,711	-2,629	-2,309	-2,228	-2,211	-3,129	-15,215
Five-year PAYGO scorecard, current Congressional session		-626	-626	-626	-626	-626							
Balances from previous sessions of Congress		-9,969	1,066	-814	25	0							
Total, five-year PAYGO scorecard		-10,595	440	-1,440	-601	-626							
Ten-year PAYGO scorecard, current Congressional session		-1,521	-1,521	-1,521	-1,521	-1,521	-1,521	-1,521	-1,521	-1,521	-1,521		
Balances from previous sessions of Congress		-8,209	-8,209	-8,209	-8,209	-8,209	-8,209	-1,838	-1,128	7	0		
Total, ten-year PAYGO scorecard		-9,730	-9,730	-9,730	-9,730	-9,730	-9,730	-3,359	-2,649	-1,514	-1,521		
Potential Sequestration, end of session		0											

- 18% 수준을 유지
- FY2015~FY2025 전망기간 동안 총지출은 약 2.5조달러 증가할 전망이며, 증가분의 32%가 주요 의료보호프로그램, 28%가 사회보장 부문에 기인
-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FY2025에 GDP의 약 79% 수준에 이를 전망으로 CBO는 FY2015~FY2025까지 8.8조달러의 정부차입이 필요하다고 추정
- (경제전망) 소비지출, 기업투자, 건설(주거용)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5년~2017년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예상
 -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 생산갭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며, 2020년 이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동일하게 설정
- 특히 실업률은 2017년에 자연실업률에 근접하는 5.3%까지 하락할 전망
- 생산갭 축소는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에 대한 하방 압력을 제거하여 물가상승률은 2016년부터 2%대로 회복, 현재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도 점차 회복될 전망

〈표 24〉 CBO, 재정전망 2014~2025년

(단위: 십억달러, %)

구 분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세입	3,021	3,189	3,460	3,588	3,715	3,865
GDP %	17.5	17.7	18.4	18.2	18.1	18.1
지출	3,504	3,656	3,926	4,076	4,255	4,517
GDP %	20.3	20.3	20.8	20.7	20.7	21.1
재정수지	△483	△468	△467	△489	△540	△652
GDP %	△2.8	△2.6	△2.5	△2.5	△2.6	△3.0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2,779	13,359	13,905	14,466	15,068	15,782
GDP %	74.1	74.2	73.8	73.4	73.3	73.7
구 분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세입	4,025	4,204	4,389	4,591	4,804	5,029
GDP %	18.0	18.1	18.1	18.2	18.2	18.3
지출	4,765	5,018	5,337	5,544	5,754	6,117
GDP %	21.4	21.6	22.0	21.9	21.8	22.3
재정수지	△739	△814	△948	△953	△951	△1,088
GDP %	△3.3	△3.5	△3.9	△3.8	△3.6	△4.0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6,580	17,451	18,453	19,458	20,463	21,605
GDP %	74.3	75.0	76.1	76.9	77.7	78.7



〈표 25〉 CBO, 경제전망 2012~2023년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2019	2020~2025
	Estimates	Forecast			Projected Annual Average	
실질 GDP 성장률 ¹⁾	2.2	2.8	3.0	2.7	2.1	2.2
CPI ¹⁾	1.2	1.5	2.3	2.3	2.4	2.4
실업률 ²⁾	6.2	5.5	5.4	5.3	5.4	5.4
금리 ²⁾						
90일(Treasury bills)	* ³⁾	0.2	1.2	2.6	3.5	3.4
10년(Treasury notes)	2.5	2.8	3.4	3.9	4.4	4.6

주: 1) 전년비
2) 연평균
3) 0.0~0.05 범위

- FY2016 대통령 예산안, 전년보다 약 6.4% 증가한 4조달러 규모로 제안 (2015.2.2.)⁵⁸⁾
 - (경제전망) 실질성장률은 2015년 3.1%, 2016년 3.0%로 FY2015 예산안 전망치보다 다소 하향 조정하였으나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은 평균 2.3%로 동일하게 가정
 - 2015~2017년까지의 성장전망이 2015년 1월 발표된 CBO의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이유를 생산성 가정의 차이로 설명
 - 2017~18년 실업률이 5% 미만까지 하락하고, 당분간 저물가가 지속된다고 전망

- (재정전망) 세제개혁, 의료 및 이민개혁 등 향후 10년간 2.2조달러 규모의 추가 감축을 포함하여,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5%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
 - FY2016 재정적자는 4,740억달러(GDP 2.5%)로 오바마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따라 GDP 대비 정부채무 규모도 FY2016 75.0%로 개선, FY2025에 73.3%까지 감소할 전망

〈표 26〉 FY2016 대통령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

구 분(CY)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명목GDP 성장률	3.7	4.6	4.7	4.7	4.6	4.4	4.3	4.3	4.3	4.3	4.3	4.3
실질GDP 성장률	2.2	3.1	3.0	2.8	2.6	2.4	2.3	2.3	2.3	2.3	2.3	2.3
CPI	1.7	1.4	1.9	2.1	2.2	2.3	2.3	2.3	2.3	2.3	2.3	2.3
실업률	6.2	5.4	5.1	4.9	4.9	5.0	5.1	5.2	5.2	5.2	5.2	5.2

58) OMB,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5.2.

〈표 27〉 FY2016 대통령 예산안 재정전망

(단위: GDP %)

구 분(FY)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정수입	17.5	17.7	18.7	19.1	19.1	19.2
재정지출	20.3	20.9	21.3	21.4	21.5	21.6
재정적자	2.8	3.2	2.5	2.3	2.3	2.4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4.1	75.1	75.0	74.6	74.3	74.1

구 분(FY)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정수입	19.3	19.3	19.4	19.5	19.6	19.7
재정지출	21.7	21.9	21.9	22.0	22.0	22.2
재정적자	2.5	2.6	2.6	2.5	2.4	2.5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4.0	74.0	73.9	73.7	73.5	73.3

- (예산기조) 오바마 집권 이후 강조해 온 ‘중산층 경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근로가구에 대한 경제적 안정, 교육·훈련 기회 보장 등을 핵심 골자로 편성
 - 세제허점 차단과 지출효율화를 통해 중산층 경제 지원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지출감축(sequestration)을 종료
 - 의료, 조세, 이민 개혁을 필두로 재정적자를 감축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세입계획) FY2016 세입 계획은 GDP 대비 18.7%(3조 5,252억달러) 규모이며, 전년 대비 약 11%(3,491억달러) 증가
 - 실질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예산안의 세계개편

〈표 28〉 FY2014 대통령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단위: GDP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인소득세	8.1	8.2	8.7	9.0	9.2	9.3	9.4	9.6	9.7	9.8	9.9	10.0
법인세	1.9	1.9	2.5	2.5	2.4	2.4	2.3	2.1	2.0	2.0	1.9	1.9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수입	6.0	6.0	6.0	6.0	6.0	6.0	6.0	6.0	6.1	6.1	6.2	6.2
소비세	0.5	0.5	0.6	0.6	0.6	0.6	0.6	0.5	0.5	0.5	0.5	0.5
유산세 및 증여세	0.1	0.1	0.1	0.2	0.2	0.2	0.2	0.2	0.2	0.2	0.2	0.2
관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연방준비제도 이익금	0.6	0.5	0.4	0.2	0.2	0.2	0.2	0.2	0.2	0.2	0.2	0.2
기타수입	0.2	0.2	0.2	0.3	0.3	0.3	0.3	0.3	0.3	0.3	0.3	0.3
이민개혁 총당금	*	0.1	0.1	0.2	0.2	0.2	0.2	0.3	0.3	0.3
총재정수입	17.5	17.7	18.7	19.1	19.1	19.2	19.3	19.3	19.4	19.5	19.6	19.7

주: * GDP 0.05% 이하



제안 효과가 반영된 결과

- 중산층 및 근로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자 및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

- ☞ 자녀 및 피부양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연소득 12만달러까지), 자녀세액공제를 최대 3배 확대(자녀당 3,000달러까지), 유소득 배우자에 500달러의 추가 세액공제 신설 등
- ☞ 자본이득 및 배당 세율을 28%까지 인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본소득 20만 달러(부부, 독신 10만달러)까지, 주택 50만달러(부부, 독신 25만달러)까지 면제
- ☞ 25만달러(부부, 독신 20만달러) 초과 연소득자에 대해 항목별 공제 및 기타 세금우대 한도를 28%로 제한
- ☞ 법인세율을 28%로 인하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기업 해외소득에 대해서

도 19%의 최소세율 적용

• (세출계획) FY2016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조 5,430억달러,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조 1,680억달러 규모

* BCA법 등에 따른 FY2016 재량지출 예산권한 한도는 1조 160억달러(CBO, 2015.1)

- 의무지출 중 메디케어 지출이 전년 대비 큰 폭(10.0%)으로 증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이드 지출은 5.3%씩 증가
- 프리스쿨 지원 등 교육 개혁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부 재량지출 예산권한을 2015년 입법수준보다 36억달러 증액한 707억달러로 요청
- 국립보건원의 바이오메디컬 연구지원(313억달러) 등 R&D 예산은 총 1,460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5.5% 증가
- 도로인프라 개선을 위해 6년간 총 4,780억달러의 예산권한 재조정(reauthorization) 제안을

〈표 29〉 FY2016 대통령 예산안 분야별 지출전망

(단위: GDP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량지출	6.5	6.4	6.2	6.0	5.7	5.4
국방	3.5	3.3	3.2	3.0	2.8	2.7
국방 외	3.0	3.1	3.0	2.9	2.8	2.7
의무지출	12.5	13.2	13.5	13.6	13.7	13.9
사회보장	4.9	5.0	5.0	5.0	5.1	5.2
메디케어	2.9	2.9	3.1	3.0	2.8	3.0
메디케이드	1.7	1.9	1.9	1.8	1.9	1.9
기타 의무지출	2.9	3.5	3.5	3.7	3.8	3.7
이민개혁 총당금	*	0.1	0.1	0.1
순이자	1.3	1.3	1.5	1.8	2.1	2.2
재해복구 및 구호비용	*	*	*	*	*
총지출(outlay)	20.3	20.9	21.3	21.4	21.5	21.6

주: * GDP 0.05% 이하

〈표 29〉의 계속

(단위: GDP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량지출	5.3	5.1	4.9	4.8	4.7	4.5
국방	2.6	2.5	2.5	2.4	2.4	2.3
국방 외	2.6	2.6	2.4	2.3	2.3	2.2
의무지출	14.0	14.2	14.3	14.5	14.6	14.8
사회보장	5.3	5.3	5.4	5.5	5.6	5.6
메디케어	3.1	3.1	3.3	3.3	3.2	3.4
메디케이드	1.9	1.9	1.9	2.0	2.0	2.0
기타 의무지출	3.7	3.7	3.5	3.6	3.6	3.5
이민개혁 총당금	0.1	0.1	0.1	0.2	0.2	0.2
순이자	2.4	2.5	2.7	2.7	2.8	2.8
재해복구 및 구호비용	*	*	*	*	*	*
총지출(outlay)	21.7	21.9	21.9	22.0	22.0	22.2

주: * GDP 0.05% 이하

포함

☞ 동 재원은 기업들이 해외에 축적하여 과세되지 않은 소득(2조달러)에 14%의 일회성 부담금을 부과하여 마련할 계획

부록 1 그리스 최근 상황

- (조기 대신 실시) 구제금융 조기종료 계획이 연기되면서 정권안정을 위해 조기 대신을 실시했으나, 대통령 선출에 실패
 - 그리스 사마라스 총리는 국채시장 자금조달에 성공하면서 구제금융 조기 종료 계획을 선언했으나, 트로이카는 구제금융 종료 시한을 2개월 연장
 - 2010년 금융위기로 약 2,4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약속을 받고 긴급 프로그램을 이행 중
 - 2014년 4월, 30억유로의 국채 발행에 성공 후 2014년 12월까지 구제금융 조기 종료 계획 선언
 - 트로이카는 구제금융 조건인 공공인력 감



- 축, 구조개혁 이행 미흡을 이유로 마지막 분할 지원금 지급을 2015년 2월로 2개월 연기
- 정권 안정을 위한 조기 대선 결과, 3차 투표에서도 디마스 후보가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선출 실패
 - 그리스 헌법상 대통령직은 상징적 국가원수로 의회에서 선출되며, 정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됨(3차 투표는 5분의 3)
 - 연립정부는 디마스 전 외무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
 - 대선 투표 부결로 사마라스 총리(신민당 당수)는 의회를 해산하였고, 1월 25일 조기총선이 실시될 예정

〈표 30〉 그리스 대선 결과

(단위: 명)

대통령 선거	찬성	반대	정족수
1차(12.17)	160	135	200/300
2차(12.23)	168	131	200/300
3차(12.29)	168	132	180/300

- (조기 총선) 1월 25일 예정인 총선에서 구제 금융에 반대하는 시리자(Syriza)당 중심의 집권 가능성으로 정치적 불안감이 확산
 - (시리자당 공약) 트로이카에 부채 탕감 요구, 긴축 완화
 - 상환 만기 연기, 구제금융 부채와 이자의 50% 축소 주장
 - 최저임금 인상, 공공서비스 확대, 복지지출 확대, 민영화 계획 중지, 재벌개혁 단행 등
 -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부인
 - (신민주당 공약) 신민주당과 사회당 등의 연정

구성으로 현 긴축안을 이행, 유로존 잔류

- 시리자당이 제1당으로 집권할 경우, 부채탕감 및 긴축프로그램 반대로 트로이카와 충돌이 예상됨
 - 여론 조사 결과, 시리자(Syriza)당이 여당인 신민주당(ND)을 약 3~4%p 앞서고 있음 (1.11일 기준)
 - 지난 2012년 재총선에서는 신민주당이 29.6% 득표율로 승리하고, 시리자당이 근소한 차이로 제2당이 된 바 있음

〈표 31〉 현 그리스 의회 구성

정당	정치성향	의석수
신민주당(ND)	중도우파/보수	127석
시리자(Syriza)	급진좌파	71석
사회당(PASOK)	중도좌파	28석
그리스독립당	우파	12석
황금새벽당	극우	16석
민주좌파당	중도좌파/좌파	9석
공산당	공산당	12석

부록 2 그리스 조기 총선 경과

- (그리스 총선 결과) 그리스 조기총선(2015.1.25)에서 시리자(Syriza)당이 승리
 - (개표결과) 시리자당이 득표율 36.34%를 기록하며 의석수 149*석을 확보
 - * 제당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의석 50석 포함

(표 32) 그리스 총선 결과

(단위: %, 개수)

정당	SYRIZA	New Democracy	Golden Dawn	To Potami
득표율	36.34	27.81	6.28	6.05
의석(300석)	149	76	17	17

정당	Communist Party of Greece	Independent Greeks	PASOK-DP
득표율	5.47	4.75	4.68
의석(300석)	15	13	13

자료: 그리스 내무부⁵⁹⁾

- (연정구성) 치프라스(Alexis Tsipras) 신임 총리는 정치성향은 다르지만 구제금융(bailout) 조건에 반대하는 그리스독립당과 연립 정부 구성에 합의(2015.1.26.)
 - 연립정부는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 재무장관 등 주요 내각 인사를 발표(2015.1.27.)

부록 3 그리스 총리의 의회 연설 주요 내용 (2015.2.8.)⁶⁰⁾

-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정책 성명(policy statements) 관련 의회 연설에서 새 정부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을 발표
 - (구제금융 관련) 구제금융 연장을 하지 않고 브릿지론(bridge loan)등 가교 프로그램을 통해 6월까지 협상을 위한 여유를 마련할 계획
 - (주요 정책) 정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구제금융 관련 손실과 인도주의적 측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힘
 - 최저 임금을 현행 580유로에서 2016년까지 751유로로 점차 인상
 - 저소득 연금 수급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 구제금융의 피해자들에 대한 에너지, 주택, 의료 서비스 무상 제공
 - 불법적으로 해고된 공공부문 근로자 복직
 - 면세 소득 구간을 현행 5,000유로에서 12,000유로로 회복
 - 비용 감축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수단 제시
 - 부패와 탈세 감시를 위한 대응
 - 천연 자원으로부터의 수입을 연금 기금에서 활용
 - 부처 관용 차량 및 정부 전용기 감축
 - 대규모 재산에 대한 신규 과세

59) 자료: [http://ekloges.yes.gr/current/v/public/index.html?lang=en&fullsite=1#{"cls":"main","params":{}}](http://ekloges.yes.gr/current/v/public/index.html?lang=en&fullsite=1#{)

60) 참고: <http://www.primeminister.gov.gr/2015/02/08/13322>

<http://www.ft.com/intl/cms/s/0/9d493d48-afd5-11e4-b42e-00144feab7de.html#axzz3REZp03bj>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1261475>

http://www.nytimes.com/2015/02/09/world/europe/alexis-tsipras-greek-prime-minister-wont-look-to-extend-bailout.html?_r=0#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2/08/us-eurozone-greece-idUSKBN0LCOE920150208?feedType=RSS&feedName=topNews>



- 이 외에도 새로운 국영 방송국 신설, 독일에 대한 2차 대전 배상금 청구 및 나치 관련 부채 상환 요구 등을 언급

〈자료 수집 및 정리: 권나현 연구원〉

정책 흐름



-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14년 가계소득 3.4% 증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
-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
- 중소 수출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 관세청,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외교 강화
-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 시행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본 자료는 2015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4년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서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서식),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서식),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법예고·부처협의(2.17~3.2),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6) 예정

참고 '14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19의 3·부가§47·법인§6·소득§23, §57)
 -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2.9%)*을 적용하여 과세
 - * 7개 시중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 (개정)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2.5%로 인하

• (적용시기)

- ① (국기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② (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③ (법인·소득규칙) '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저율 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 신설(소득규칙§11의 2)

【시행령 개정내용】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3~5%)하도록 함(소득령 제20조의 2)

- (신설)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①+②+③
 - ① 200만원
 - ② 의료비, 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 ③ 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 휴직·휴업기간(월)×150만원

-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신설(소득규칙 §15의 3)

【시행령 개정내용】 근로소득이지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소득령 제38조)

- **(신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적립 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 선택 불가,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보완(소득규칙 §83의 5④, 법인규칙 §46의 2③)

-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른 토지 양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개정)**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소득규칙 §76의 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약정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소득령 제161조의 2)

- **(신설)**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선물·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

* 선물, 옵션(반대거래): (매도계약의 약정가격-매수계약의 약정가격)×거래승수

* 콜옵션 매수자 만기도래시: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행사가격), 0]-약정가격]×거래승수

-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규정(법인규칙 §46의 3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

- 사업용 유·무형고정자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토지 및 건설비 등(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①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 **(업무용 건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건물 일부 임대 시 자가사용 (연면적)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자가사용 시 모두 투자로 인정
 - **(부속토지)**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
* 지방세법(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 인정범위(상업지역 3배, 건축사레 등 감안)
- ②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연도 단위과세, 투자 부족·초과액의 다음 사업연도 이

월 허용 취지 등을 감안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세무서장 승인 필요)

* 용도변경,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취득 시기에 따른 형평문제(1~2년) 등 감안

③ (사후 관리) 아래의 경우 부속토지·건축비 투자인정액 상당세액 추징

- 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 위반 시
-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시
- 건물 완공후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매매·임대비율만큼 추징)

* 사후관리 예외: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를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법인규칙 §46의 3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

- (신설)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것*

* 상법에 따라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및 취득가액 총한도 등에 대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필요

■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 (현행)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은 10년
- (개정)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 → 7년으로 단축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특허권부터 적용

■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서식 영문화(법인규칙 §82⑩, 소득규칙 §100 제29의 3호 별지 제29의 2 서식)

-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글 신청서 제출
- (개정) 영문 신청서 서식 신설(영문 신청서 제출 가능)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조특규칙 §7 ⑩)

- (현행)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
- (개정)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추가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조특규칙 §47의 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하여 매년 9.30일까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산정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신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배당성향: 3개연도 현금배당금액 합계 / 3개연도 당기순이익 합계

배당수익률: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금액/보통주 주가의 3개 연도 평균

** 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기업합병·분할·결산기 변경 법인은 시장평균 산정 시 제외

- **(적용시기)** '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세부사항 규정 (조특규칙 §9의 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과세특례 신청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스톡옵션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스톡옵션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신청서를 벤처기업에 제출(조특령 제14조의 3)

- **(신설)**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을 신설하고,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 사유로 규정

* (i)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 (ii)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명칭 사용 (iii)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 (iv) 계좌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입고

- **(적용시기)** '15.1.1일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증여세 면제(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 추가(상증규칙§3)
- **(현행)** 종교·자선·학술·장학 등 공익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연수사업, 한국전파연구원의 기술교육 사업 등
- **(개정)**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②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추가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6 주세법 시행규칙

-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 구체화(주세규칙 §2의 3)

* 주류제조장의 담금·저장 등과 관련한 시설기준의 적용 배제

- **(신설)** 축제·경연대회의 주관기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완화(국조규칙 §6②)
- **(현행)**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1억원 이하, 재화거래 10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면제
- **(개정)** 용역거래 2억원 이하까지 제출 면제
-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농림특례규칙

-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농림특례규칙 별표2 제17호)
- **(현행)** '11.7.1일 이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 면세 등유 전용 공급*
- * 부정유통 가능성이 큰 등유 외의 유종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 **(개정)** '11.6.30일 이전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면세 등유 전용 공급
- **(적용시기)** '15.7.1 이후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등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선적일 전후 90일' 기준 신축 적용(관세규칙 §7)

- (현행)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 선적된 동일·유사 물품의 과세가격 적용 가능
- (개정) 거래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 선적일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 계절·작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농산물 등과 달리, 공산품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변동 주기가 길어(시장조건 및 상관행 유사) 90일을 초과하여 적용 가능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경감 배제사유 규정(관세규칙 §9의 2)

【시행령 개정내용】 보정기간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관세령 제39조②)

- (신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확대(관세규칙 별표2)

- (현행)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하는 물품(5종류), 희귀병 치료제(10종류)
- (개정)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 추가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 변경(관세규칙 §9의 3)

- (현행) 3.4%
- (개정) 2.5%(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품목분류 재심사 분석 신청수수료 규정(관세규칙 §33)

【법률 개정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 (관세법 제86조⑥)

- (현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
- (개정)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 현실화(관세사칙 §3)

- (현행)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 1만원
- (개정) 수수료 1만원 → 2만원 인상*
*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01년 책정(1만원) 이후 동결되었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

1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범위 개선(환특규칙 §12)

- (현행)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 (개정) 환급신청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후 시점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 불가
- (적용시기) '15.7.1일 이후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년 가계소득 3.4% 증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

- '14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

* 본 자료는 2015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에서 발표한 「'14년 가계소득 3.4% 증가, 소득분배 개선 지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① (연간) 완만한 경기 회복세, 고용호조* 등으로 '14년 가계소득(3.4%)은 근로소득(3.9%)을 중심으로 전년(2.1%)보다 증가세 확대

* 취업자 증감(만명): ('09년)7.2 ('10년)32.3 ('11년)41.5 ('12년)43.7 ('13년)38.6 ('14년)53.3

** 명목증가율(전년비, %): ('09년)1.2 ('10년)5.8 ('11년)5.8 ('12년)6.1 ('13년)2.1 ('14년)3.4

실질증가율(전년비, %): ('09년)△1.5 ('10년)2.8 ('11년)1.7 ('12년)3.8 ('13년)0.8 ('14년)2.1

• 사업소득*은 소폭 증가(0.5%, +0.1%p)한 반면, 기초연금 도입(14.7월) 등으로 이전소득은 증가세가 확대(4.2%, +0.7%p)

* 자영업 취업자 증감(천명): ('10년)△118 ('11년)1 ('12년)124 ('13년)△67 ('14년)1

② (4/4분기)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완만해짐에 따라 사업소득(△3.4%)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가세(2.4%)가 둔화

* 성장률(전기비, %): ('13.4/4)0.9 ('14.1/4)0.9 (2/4)0.5 (3/4)0.9 (4/4)0.4

** 명목증가율(전년 동기비, %): ('13.4/4)1.7 ('14.1/4)5.0 (2/4)2.8 (3/4)3.0 (4/4)2.4

③ (분배지표) '14년 4.45배로 '04년 이후 가장 낮고, 4/4분기에도 4.54배로 '03년 이후 가장 낮아 '08년 이후 개선 흐름 지속

* '14년 분위별 소득증가율(%): (1)5.6 (2)2.2 (3)3.6 (4)2.9 (5)3.6

* 연간 소득5분위배율(배): ('03년)4.43 ('04년)4.61 ('07년)4.95 ('10년)4.81 ('13년)4.55 ('14년)4.45

4/4분기: ('03년)5.00 ('04년)5.41 ('07년)5.34 ('10년)4.97 ('13년)4.61 ('14년)4.54

■ (시사점)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진 →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

•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30조원), 규제개혁 가속화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시행(1.1일) 등을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

•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 강화(업종별 생산성 지표 마련),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등 민간의 자발적 임금인상 여건 개선

• 유가하락이 공공요금 등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통신·의료·주거비 등 경감 노력* 강화

* 유치원비 인상을 상한제 도입 추진, 알뜰폰 활성화, 선택진료비 감축 등 비급여 항목 개선, 매입·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만호) 등

참고 2014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상세 분석

I. '14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소득·지출 동향

1. 가계소득 동향

■ **(연간)** 월평균 소득은 430.2만원(전년 대비 3.4% 증가)

• '13년에 비해 명목·실질소득 모두 증가율이 상승
 * 명목증가율(전년비, %): ('09년)1.2 ('10년)5.8 ('11년)5.8 ('12년)6.1 ('13년)2.1 ('14년)3.4

실질증가율(전년비, %): ('09년)△1.5 ('10년)2.8 ('11년)1.7 ('12년)3.8 ('13년) 0.8 ('14년)2.1

•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3.9%) 및 기초연금 도입('14.7월)에 따른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4.2%) 증가세 확대 등에 기인

* 취업자 증감(만명): ('09년)7.2 ('10년)32.3 ('11년)41.5 ('12년)43.7 ('13년)38.6 ('14년)53.3
 근로소득증가율(%): ('09년)1.3 ('10년)5.0 ('11년)6.3 ('12년)7.7 ('13년)2.8 ('14년)3.9

■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426.4만원(전년 동기비 2.4% 증가)

• '14년 들어 이어진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은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3/4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

* 명목증가율(전년 동기비, %): ('13.4/4)1.7 ('14.1/4)5.0 (2/4)2.8 (3/4)3.0 (4/4)2.4
 실질증가율(전년 동기비, %): ('13.4/4)0.7 ('13.1/4)3.9 (2/4)1.1 (3/4)1.6 (4/4)1.4

2. 가계지출 동향

■ **(연간)** 가계지출은 월평균 335.6만원(전년 대비 2.9% 증가)

• 소비지출은 월평균 255.1만원(전년비 2.8%, 실질 1.5% 증가)

* 소비지출 증가율

(명목, %): ('10년)6.4 ('11년)4.6 ('12년)2.7 ('13년)0.9 ('14년)2.8
 (실질, %): ('10년)3.4 ('11년)0.6 ('12년)0.5 ('13년)△0.4 ('14년)1.5

- '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2.8%)을 보인 소비지출이 가계지출 증가율 상승을 견인

- 자동차 구입 등 교통(8.6%), 여가(5.6%), 내구재 소비(5.5%) 등이 크게 늘면서 증가세 확대

- 연료비 감소(온화한 기후), 통신서비스 지출 감소 등으로 주거광열, 통신비 등이 감소하고, 교육비 상승도 완만(0.4%)

- 한편, 월세가구* 비중 증가에도, 유가하락** 및 온난한 기후*** 등으로 연료비 지출이 감소(△6.4%)하면서 주거비가 감소(△0.8%)

* 차가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 ('06년)45.8 ('10년)49.7 ('12년)50.5 ('14년)55.0

** 두바이유 가격(달러/B): ('12년)109 ('13년)105 ('14년)97 ('15.1월)46

*** 전국 평균 기온(°C): ('01~'10년)12.8 ('13년)12.9 ('14년)13.1

•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80.5만원(전년 대비 3.0% 증가)

- 경상·비경상 조세, 연금·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 부담은 감소(△1.7%)

*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1년)5.82 ('12년)5.17 ('13년)4.54 ('14년)4.02

■ **(4/4분기)** 가계지출은 월평균 326.8만원(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 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250.6만원(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

- 담뱃값 인상('15.1월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연 분위기 확산* 등으로 담배지출이 감소(△0.7%)한 것으로 추정

* 담배클리닉 월평균 등록자 수(천명): ('13.4/4)28.6 ('14.1~3/4)32.0 (4/4)50.8

- 통신비 지출은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효과의 본격화, 알뜰폰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감소(Δ4.1%)한 것으로 보임

* 이통 3사는 '14.8월 말부터 이동전화 가입비 50% 인하 (SKT '14.11월, 완전폐지)

** 알뜰폰 가입자 수(만명): ('14.3월)287 (6월)349 (9월)414 (12월)458

•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76.1만원(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 취업자 증가 등으로 경상조세(9.2%), 연금(4.1%), 사회보험(7.8%) 등은 상승한 반면, 이자비용*은 감소(Δ9.7%)

*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10월, 2.25% → 2.0%, Δ25bp 감소)

3. 가계수지 동향

■ (연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49.8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

• 가계의 소득증가율(3.4%)이 지출증가율(2.9%)을 상회하면서 가계 흑자액(94.7만원)은 전년 대비 5.2% 증가

*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 흑자액=가계소득-가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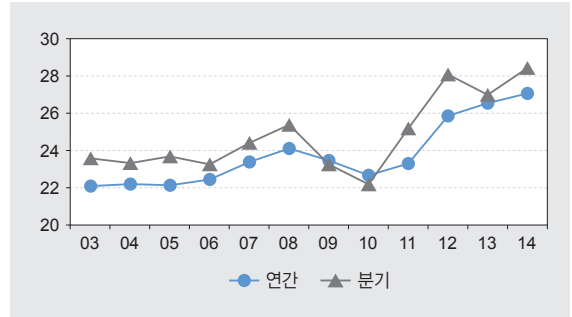
- 흑자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대비 0.4%p 상승한 27.1%로, '03년 이후 최고치

• 적자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0.5%p 하락한 22.0%로 전국가구 기준 조사를 시작한 '03년 이후 최저 수준

* 적자가구 비중(%): ('03년)25.5 ('05년)26.4 ('07년)25.9 ('09년)25.7 ('11년)26.4 ('13년)22.5 ('14년)22.0

흑자율 추이

(단위: %)



주: 분기는 해당연도 4/4분기 비교

적자가구 비율

(단위: %)

구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전체	22.5	23.4	22.0	25.6	23.0	22.0	22.6
1분위	51.7	53.6	46.5	52.7	48.4	47.0	50.5
2분위	26.7	25.7	26.1	29.6	26.8	26.8	25.7
3분위	14.5	15.8	17.1	21.2	19.8	17.8	17.1
4분위	13.1	12.2	12.6	15.6	11.7	10.8	12.7
5분위	6.5	8.7	7.6	8.8	8.1	7.7	7.1

주: 적자가구=가계소득<가계지출

■ (4/4분기) 처분가능소득(350.3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2.9%)했고, 흑자액(99.7만원, 8.3%) 및 흑자율(28.5%, 1.4%p)도 증가

• 적자가구 비중은 22.6%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

* 적자가구 비중(%): ('13.4/4)23.4 ('14.1/4)25.6 (2/4)23.0 (3/4)22.0 (4/4)22.6

II. 소득 분위별 동향

■ (소득) 저소득층인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에서 증가

* '14년 분위별 소득증가율(%): (1)5.6 (2)2.2 (3)3.6 (4)2.9 (5)3.6
4/4분기 분위별 소득증가율(%): (1)3.4 (2)1.1 (3)0.6 (4)1.2 (5)4.3

■ **(지출)** 중간 소득층인 3분위를 중심으로 가계지출이 증가

* '14년 분위별 가계지출증가율(%): (1)△0.4 (2)1.1 (3)6.5 (4)1.0 (5)4.0
4/4분기 분위별 가계지출증가율(%): (1)1.4 (2)△0.1 (3)2.2 (4)0.0 (5)0.7

■ **(가계수지)**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에서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고,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3·5분위를 제외하고 흑자율도 개선

'14년 분위별 처분가능소득과 흑자율 비교

(단위: 만원, %, %p)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처분가능소득 (전년 동기비, %)	120.8 (7.4)	238.7 (1.9)	324.1 (3.6)	418.1 (2.7)	647.2 (3.8)
흑자율 (전년 동기비, %p)	△4.1 (7.8)	15.3 (1.3)	21.9 (△2.7)	29.3 (1.8)	38.4 (△0.4)

• 4/4분기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한 3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분위의 흑자율이 개선

* 4/4분기 분위별 소비지출증가율(%p): (1)1.8 (2)△0.1 (3)3.3 (4)0.0 (5)0.3
* 4/4분기 분위별 흑자율 증감(%p): (1)2.7 (2)1.3 (3)△1.6 (4)1.1 (5)2.7

■ **(소득5분위배율)** '14년 4.45배로 '04년 이후 가장 낮고, 4/4분기에도 4.54로 '03년 이후 가장 낮아 '08년 이후 개선 흐름 지속

* 연간 소득5분위배율(배): ('03년)4.43 ('04년)4.61 ('07년)4.95 ('10년)4.81 ('13년)4.55 ('14년)4.45
4/4분기: ('03년)5.00 ('04년)5.41 ('07년)5.34 ('10년)4.97 ('13년)4.61 ('14년) 4.54

※ (참고) 현재 가계동향조사에 농가경제조사(2,800가구) 결과를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중으로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중산층 비중 등 소득분배지표와 인가구, 농가 포함 통계는 '15.1/4분기 가계동향(5월말)에 발표될 예정

Ⅲ. 평가 및 시사점

■ **(소득·지출)** '14년 완만한 경기개선, 고용호조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소비지출도 증가하는 모습

* GDP 성장률(%): ('10년)6.5 ('11년)3.7 ('12년)2.3 ('13년)3.0 ('14년) 3.3

* 취업자 증감(만명): ('10년)32.3 ('11년)41.5 ('12년)43.7 ('13년)38.6 ('14년)53.3

• 소득은 임금근로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3.9%),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4.2%)로 증가세가 확대

* 가계소득 증가율(명목, %): ('10년)5.8 ('11년)5.8 ('12년)6.1 ('13년)2.1 ('14년)3.4

- 사업소득(0.5%)이 소폭 증가하고, 금리 하락(기준금리 0.5%p ↓)으로 재산소득(△3.1%) 감소

• 소비지출은 자동차 구입 등 교통(8.6%), 여가(5.6%), 내구재 소비(5.5%) 등이 크게 늘면서 증가세 확대

* 소비지출 증가율(명목, %): ('10년)6.4 ('11년)4.6 ('12년)2.7 ('13년)0.9 ('14년)2.8

- 연료비 감소(온화한 기후), 통신서비스 지출 감소 등으로 주거광열(△0.8%), 통신비(△1.6%) 등이 감소하고, 교육비 증가도 완만(0.4%)

•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사회보험료 및 연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 증가

- 경상조세는 ① 누진과세 구조하에서의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과 ② '13년 세법 개정** 등으로 증가(5.8%)

* '14년 고용호조(+53.3만명)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과표구간 상승 등으로 자연증가('11~'13년간 근로소득세 평균 증가액: 21조원)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의 조정(3 → 1.5억원 초과) 등 '14년부터 적용된 동 개편 효과로 근로소득세수 증대효과는 약 1조원으로 추정

- 비경상조세(양도소득세, 부동산취득등록세 등)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14년 100만건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증가(14.5%)

- 가계소득보다 높은 세부담 증가는 누진과세 구조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 소득세수 · 가계소득(국민계정 기준) 증가율('10~'13년): (韓)11.2>4.8 (美)11.2>3.7 (獨)7.1>2.6 (日)2.6>△0.1 (OECD)4.8>1.7

-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세*에 따라 사회보험(7.2%), 연금(5.4%), 등의 지출도 증가

* '14년 사회보험 가입률(임금근로자, 8월 기준, %, 전년 대비 증감 %p): (국민연금) 67.9(+0.3) (건강보험) 71.4(+0.1) (고용보험) 68.8(+1.1)

- 소득이 비소비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도 확대

* '13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1.9%(소득 증가율 2.1%<비소비 지출 증가율 2.8%)

'14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3.5%(소득 증가율 3.4%>비소비 지출 증가율 3.0%)

■ **(소득분배)** 저소득층(1분위)을 중심으로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 5분위배율도 개선세 지속

* 분위별 소득증가율(%): (1분위)5.6 (2분위)2.2 (3분위)3.6 (4분위)2.9 (5분위)3.6

* 소득5분위배율(배): ('10)4.81 ('11)4.80 ('12)4.69 ('13)4.55 ('14)4.45

- 기초연금* 도입('14.7월) 등으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지속

*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급 (431만명, '14.10월 기준)

■ **(시사점)**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진 →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

-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30조원), 규제개혁 가속화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시행(1.1일) 등을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

-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 강화(업종별 생산성 지표 마련),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등 민간의 자발적 임금인상 여건 개선

- 유가하락이 공공요금 등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통신·의료·주거비 등 경감 노력 강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알뜰폰 활성화, 선택진료비 감축 등 비급여 항목 개선, 매입·전세임대주택 추가공급(1만호) 등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

* 본 자료는 2015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에서 발표한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회의 개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2.13.(금)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함(방문규 2차관 주재)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

* 18개 분과별로 민간전문가 PM(Project Manager)을 두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가 참여

■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

- 지난 2년간 재정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
- 이에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할 계획
-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할 계획

■ 이번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구성함

- 앞으로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걸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하여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또한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하여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분과*'를 구성함

* 재난 및 방재 전문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안전 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논의 예정

- 더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중기 재원배분 및 재정개혁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분과의 경우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를 연구책임 기관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5월 말 공개토론회 개최시에도, 복지·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는 다양한 정책고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

-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5월) 등을 거쳐 9월 중순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중소 수출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 '15년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 -

* 본 자료는 2015년 2월 6일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발표한 「중소 수출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관세청은 중소기업 대상 27일(금)까지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 AEO(성실무역업체)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1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236개 업체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AEO 공인을 획득했다.

- 관세청은 올해 46개 중소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인에 필요한 자문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 AEO 공인획득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주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세관에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3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관련 세부사항 및 각종 문은 관세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 또, 중국·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 체결에 이어, 베트남·인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외교 강화

– 제16차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청장회의 –

* 본 자료는 2015년 2월 6일 관세청 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에서 발표한 「관세청,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외교 강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김낙회 관세청장은 2. 5.~2. 6.(현지 시각)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청장회의’에 참석하여 24개 회원국의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방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발효에 대비한 각국의 법·제도 정비 및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에 대한 공조단속 대책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 회의에서 관세청장은 우리 관세청의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를 통해 각국의 신종마약 단속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부정부패 신고자 포상조치 및 신고센터 운영,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 청렴문화제 개최 등

* RILO A/P: 아태지역 마약단속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국·중국·홍콩·일본 세관직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서울 소재)

• 또,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을 위해 한국의 성공경험* 등 모범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WCO와 공동으로 발간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의 사전심사제도 등

■ 회의 이후 관세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일본,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등 대표단과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 말레이시아와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실무 협상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교역·투자가 급증하는 신흥국과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통관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당국이 공인한 성실 무역업체에 대해 통관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09년 도입

** 우리나라의 AEO 업체가 상대국에서도 AEO 혜택을 받게 되는 세관당국 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국과 체결

• 호주와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고, 일본과는 마약·밀수 등 단속을 위한 여행자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해 논의했다.

• 또,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등 개도국과도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화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행정한류 확산

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 한편, 관세청은 올해 6월에 개최될 WCO 국장선거와 관련,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태지역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 WCO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주도하는 국장직위*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고, 한국은 지난해 관세무역국장 직위에 후보자를 내정하여 현재 선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 * WCO 국장직위: 조사통관국, 능력배양국, 관세무역국(임기: 5년)
- 관세청은 이번 회의가 한국 관세청이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 시행

* 본 자료는 2015년 2월 2일 기획재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 2월부터 시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지원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산은 등 관계기관 협의(2회)와 주요 업종별 협회·회원사에 대한 설명회(1,20) 등을 통해 기업 의견 수렴

- 동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방식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수요에 따라 지원조건 등은 탄력적·맞춤형으로 운영할 예정

-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SOC분야 등에서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관계부처 등을 통한 사전조사 결과 구체성이 확인된 약 5조원 규모 투자수요를 파악하였으며, 동 프로그램 본격화 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단, 실제 지원 여부 및 규모는 산은 사업성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계획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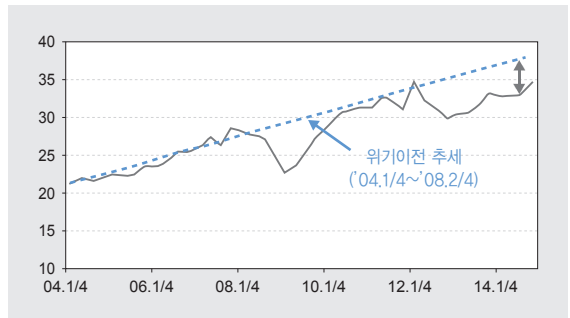
- '12년 이후 최근 우리경제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큰 폭으로 하회

*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실질, %): ('02~'11년)4.9 ('12~'14년)1.5

- 저금리 등 기업의 재원조달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투자리스크 확대가 투자부진의 주요요인

최근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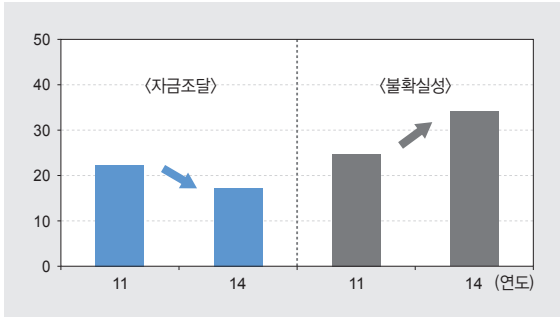
(단위: 실질, 계절조정, 조원)



자료: 국민계정('10년 기준)

설비투자 애로 요인

(단위: %)



자료: 산업은행(舊 정금공) 설비투자계획조사

- 기존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을 도입
 - 기업과의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투자 등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지원

2. 세부운영 계획

◇ 동 프로그램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지원조건 등을 탄력적·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

- **(운용규모)** 총 30조원
 - * 산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1:1 매칭으로 기업(민간) 투자 시 30조원 투자 유도
-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중견·대기업 모두 포함
- **(지원분야)**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산업, SOC·인프라

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그 밖의 분야도 지원 가능

- * 신성장산업: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물류, SW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등
- * 주력산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화학 등
- * 대형 투자프로젝트: SOC 사업, 대형 플랜트 건설, 산업 인프라 구축 등

- **(자금용도)** 시설투자(시설 가동 소요자금* 포함), R&D자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M&A·분사시 소요자금(설비·R&D투자 연계사업 우선) 등
 - * 사업장 구입, 건물 신·증축, 기계구입자금 등
- **(지원한도)** 건별·업체별 한도 제한 없음
- **(지원비율)** 총소요자금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응용
- **(지원방식)** 리스크 분담 방식의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주식 및 주식관련채(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인수 위주로 운용
 - * 사업주체(SPC) 앞 직접 투자 또는 PEF 등 집합투자기구 앞 직·간접 출자에 의한 지원 가능
 - 기업수요 및 프로젝트 특성 등에 따라 투융자 복합 금융(Package Financing), 회사채, 대출 등도 지원
- **(지원조건)** 투자규모, 자금조달구조, 회수기간 및 투·융자 비중 등 지원대상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3. 지원 절차

- 산업은행이 개별 사업자로부터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및 금융조건 협의 등을 거쳐 약정 체결
 - 개별 사업별 사업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신디케이션 방식에 의한 금융지원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성 검토 실시
- ⇒ 산업은행은 확정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2월 2일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의 지원신청을 접수

지원절차 세부 순서 및 지원신청 연락처

- ※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상담 → 예비검토 → 금융자문계약 → 사업성 검토 → 심사 및 승인 → 약정 체결
- ※ **(연락처)** 산업은행 고객센터 1588-1500, investpro@kdb.co.kr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희망하는 투자프로젝트 수요(구체성이 확인된 약 5조원 수준*)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첨부: 주요 프로젝트 수요 사례)
 - * 투자지원을 희망하는 규모이며, 프로그램 본격화 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단, 실제 지원 여부는 産銀 사업성 검토절차를 거쳐 결정)

참고 1 사전 수요조사 시 파악된 프로젝트 사례

[신성장분야] A사는 신성장분야인 친환경신소재 기술 개발 후 시장선점*을 위해 1조원 규모 생산설비 구축 추진

* 신소재 개발 관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자동차 경량화 추세 등으로 '20년까지 80조원 규모로 성장 기대

→ 현재 1개라인(1,250억원) 신설 중이며,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시 조기에 대규모 설비도입 기대

[SOC분야] B사는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중(총투자비 약 7,000억원). 이 중 1,000억원을 자본투자, 나머지 금액을 메자닌 금융(투융자 연계) 등으로 조달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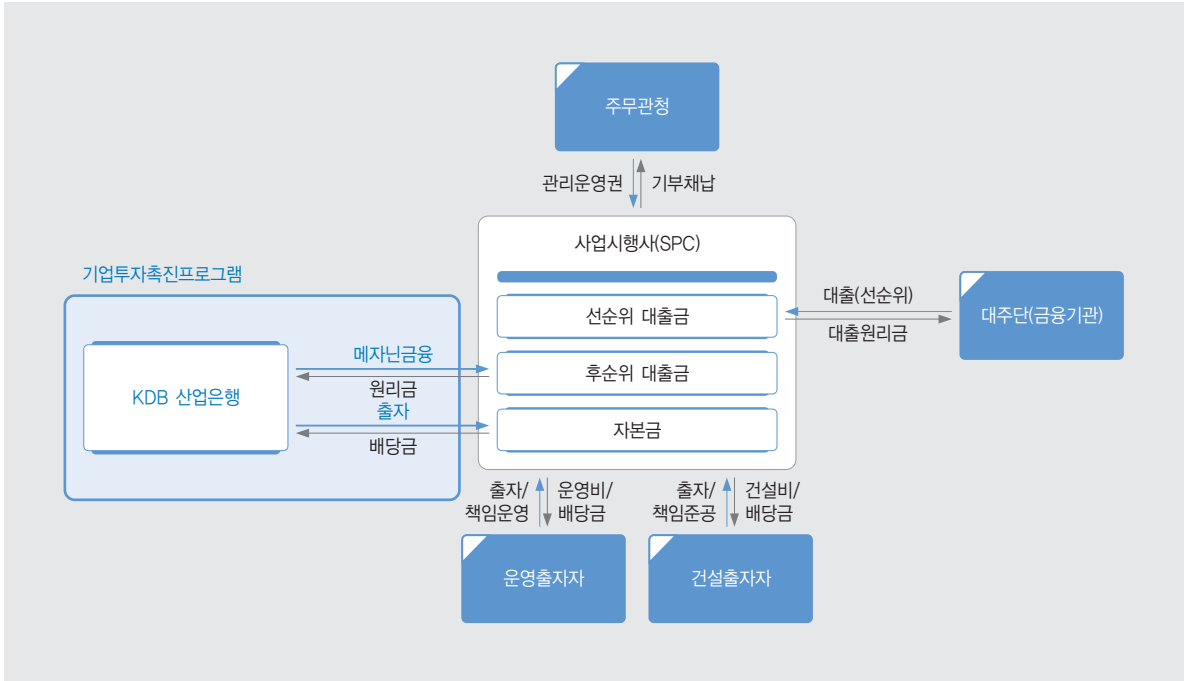
* 수도권 교통량 분산 및 경부-중부고속도로 연결망 구축 목적
→ 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 및 메자닌 금융 일부 조달 시, 전체 재원조달의 촉매역할이 기대되어 조기 건설 가능

[에너지분야] C사는 친환경 에너지원 전력공급사업으로서 도서지역에 신재생발전시설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나 리스크가 높아 대규모 민간투자(3,300억원 내외) 유치 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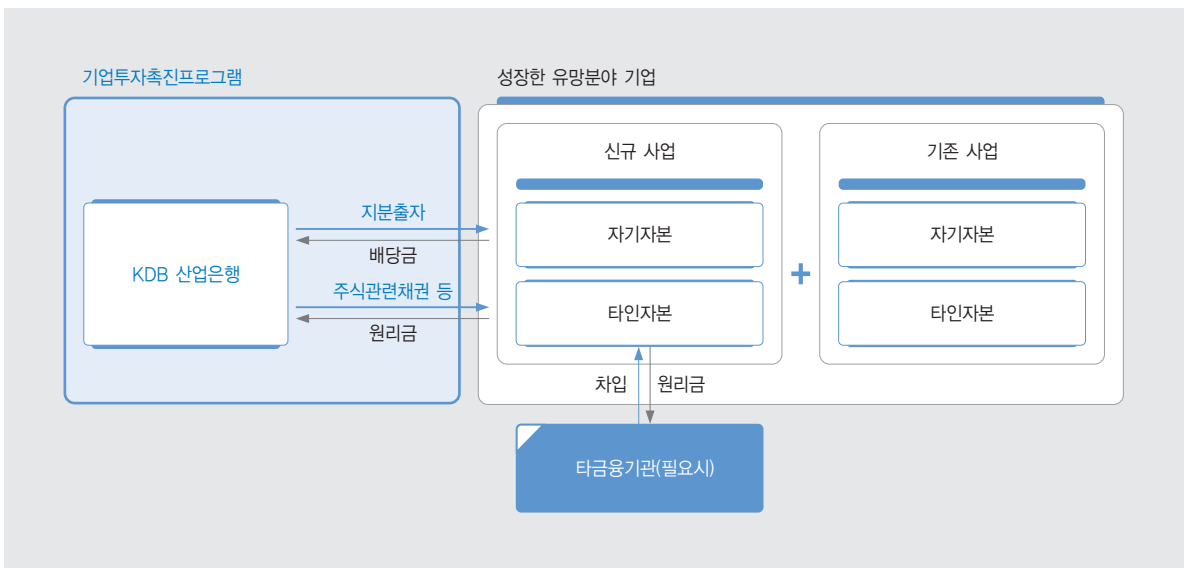
* 기존 전력공급방식(디젤발전)을 대체 → 탄소제로의 그린아일랜드 구현
→ 동 프로그램 자금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정착 시 여타도서 확대 등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 및 동남아·중남미 등 해외국가 도서지역 대상 수출 유발 가능

참고 2 프로그램 지원 방식 예시

①-SPC를 통한 지원(예: SOC 사업)



②-기업에 직접 투자(예: 신성장유망 분야)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주유소協 “알뜰주유소는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석유공 제소

한국주유소협회(이하 협회)가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12일 “최근 저유가로 인해 석유시장이 크게 변한 만큼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사업은 즉시 개선돼야 함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사업의 민간이양 약속은 지키지 않은채 석유공사의 지속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알뜰주유소에 대해 시설 지원, 외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오면서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0)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함으로써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정위에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주유소들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즉시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허경선 박사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사업’으로 지목하면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알뜰주유소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데일리, 2015-02-12〉

“고령층 재산세 부담 과중...과세이연제도 도입해야”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주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론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과세이연제도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보유자에 한해 재산세를 일정 기간 동안 대신 부담하되, 주택이 팔

리거나 주택 보유자 사망 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패널 자료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부담은 감소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재산세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세 이상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2배 이상 높았다.

고령층 세부담이 더 큰 이유는 고령층이 되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고 기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고령층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세이연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도 과세이연혜택을 받은 가구들을 추적 조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이연제도 도입 시 관련 비용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15-02-12〉

[논쟁] 재정 안정인가, 복지 확대인가

‘증세 복지’ 재정 개혁 걸림돌

육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민주화 이후 많은 정권은 대선과 인수위 과정에서 재정 총량의 한도를 인식하지 않았다. 성장률을 회복하면 재정 여력은 충분히 생긴다거나 아직까지 국가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 여러 덕담에 취해 2월 말 정부 출범 직전까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는다. 3월 초 정부조직과 인사를 정비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국정을 설계할 때 비로소 국가 재정의 한계가 거대한 산처럼 새 정부의 앞길을 막아선다.

이때부터 집권세력은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은밀한 유혹에 빠져든다. 그것은 국민에게 ‘세금 인상’의 분노 어린 고통을 주지 않고 ‘재정사업 축소·폐지’의 살기 어린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복지도 늘리는 것이다. 그 유혹은 곧잘 생소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실상은 한결같다. ‘당장 지출하고 그 부담은 미래로!’ 이 유혹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은밀한 덫이었음이 5년 후 또 다른 정부가 출범할 때 밝혀지고 만다.

이런 폐습을 타파하고자 현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세출 조정 75조원(매년 15조원), 세입 확충 60조원(매년 12조원)으로 총 135조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출 조정으로 재정 배분을 변경하고 세입 확충으로 재정 총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복지의 틀도 구상했다.

그런데 정권 출범과 동시에 두 가지 측면에서 공약가계부에 심각한 도전이 나타났다. 첫째는 이전 정부가 수립한 2013년의 예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수입의 예측에 중대한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국제 수입과 해외 수입이 비현실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다. 이 때

문에 새 정부는 다급하게 세입 부족 12조원을 보전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둘째 측면의 도전은 새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통한 비정상적 재정 운용을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선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이 팽배했다. 주요 공기업 10개를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는 20조원, 노무현 정부는 120조원, 이명박 정부는 160조원의 재정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중독성 강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약가계부의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됐다. 우선 이전 정부에서 과다 계상된 국세 수입과 재정 수입을 매년 약 25조~35조원만큼 하향 조정했다. 이는 다양한 세입 확충으로 확보한 재원을 세입 결손에 우선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정규모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기업을 활용한 비정상적 재정 운용의 관행을 감안한다면 매년 약 30조원의 지출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약가계부의 기본 내용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정도와 규모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라는 세정 개혁의 이 해목은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같은 증세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을 감안한 실질적인 재정 총량이 감소함으로써 세출 구조조정의 절박함은 더해지고 있다. 산업·개발국가에서는 특정한 산업·기업·직업, 그리고 지역과 연계된 특정한 개인을 보호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일반적 속성의 일반적 개인을 보호한다. 우리는 어떻게 큰 갈등 없이 복지국가의 지출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는, 고부담-고복지와 저부담-저복지의 선택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정 개혁과 지출 조정의 미시적 과제가 더 복잡하고 어렵다.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를 손쉽게 선택하는 것은 우리 앞

에 놓인 개혁의 절박성을 이완시키는 것은 아닌가. 분주파부(焚舟破釜)의 의지가 없다면 세정개혁과 재정개혁의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울 것이다. 복지 역시 세정·재정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중앙일보, 2015-02-11〉

[시론] 복지숙려기간을 뒤야 하는 이유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필자도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만큼 낮은 소득계층에 속하나 하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다. 그런 불편함은 주어진 혜택의 달콤함으로 너무나 쉽게 대체됐고, 예산부족으로 무상지원이 폐지될지 모른다는 뉴스에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랐다. 공짜 복지는 없다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미래의 국가경제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던 필자가 무늬만 공짜인 복지의 달콤함에 포획된 것이다. 복지가 이런 것이다.

복지 확대가 시대적 소명이더라도 능력에 맞지 않는 복지 확대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도 재정위기라는, 오르지 않아야 할 산을 올라가야만 하는가. 지혜로운 정부와 책임감 있는 국회라면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 깨어 있는 국민이라면 지혜롭지 못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 정책들에 대해 꼭 필요한 정책인지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냉정히 따져 물을 것이다.

현재의 '복지 대 증세' 논란은 무상시리즈가 시행되기 이전에 보다 더 뜨겁게 진행됐어야 했다. 과거에도 '선별적 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이 충분히 진행되기도 전에 일련의 선거과정 속에서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소명으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가 현재의 논란을 낳고 있다. 현재의 논란은 우리 모두의 이기심에서 비롯됐으며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할 조정과정으로 보인다.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자는 의견, 복지를 위해 증세부터 하자는 의견, 두 가지 모두를 같이 추진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해법이 대두되고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국민은 다른 사람들의 부담으로 자신의 복지를 누리고자 한다. 이런 국민정서로는 필요한 증세가 순조로울 수 없고 이미 시행 중인 무상시리즈가 선별적 제도로 전환되기도 매우 어렵다.

하나의 대안으로 향후 3년간 복지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부족한 재원을 당분간 국가채무로 충당하며 치열하고 철저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떨까.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과정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던 논의를 3년간 치열하게 진행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은 가장 적절한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만들자.

정부와 국회의 리더십으로 일종의 ‘복지숙려기간’을 도입한다면, 먼저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세입 여건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평가해 알리고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들을 빈틈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는 보다 높은 책임의식으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며 정쟁이 아닌 건설적 정책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국민은 정부와 국회가 제시한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을 엄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후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

능한 정책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그 결과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진영 논리나 황색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서 사실에 기초한 정책비교를 통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의 순기능 제고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경제, 2015-02-11)

재정포럼

2015년 2월호 통권 제224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김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턴)

■ 월간 재정포럼

2015년 2월 16일 발행 / 제19권 제2호(통권 제22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1~5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인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